

목 차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농정방향	1
○ 박근혜 정부 4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9
□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29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 확립	35
①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37
② 미국식 “농업법” 체제 도입을 통한 5년 단위 농정 추진계획 법제화	40
③ “통상절차법” 개정으로 통상협상시 농업인 요구사항 반영 의무화	41
④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 전면 정비	43
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농업계 직능 대표의 공천 의무화	45
⑥ 농어촌 대표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재조정	46
⑦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운영	47
⑧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48
○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49
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1
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 일원화	53
⑪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치·확대	56
⑫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57
⑬ 제도권 및 민간 차원의 농업인 교육·훈련 시스템 전면 혁신	59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의 정비·확충 방안	61
⑭ 전체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63
⑮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	65
⑯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인상 및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지급	66
⑰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67
⑱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개선	69
○ 민주적·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 개혁 방안	71
⑲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73
⑳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75
㉑ 농·축협 조합원 정예화를 포함한 민주적·책임경영 체제 강화	77
㉒ 농·축협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조합원 교육 내실화	79
㉓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82
㉔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조합장·임원 선거 제도 개선	84
○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개발 정책 발전 방안	87
㉕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89
㉖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90
㉗ 고령자를 포함한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제도 확충·정비	92
㉘ 학습권 보장,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개선 방안	94
㉙ 주민 접근성 강화 및 예방적 의료 강화를 위한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	96
㉚ 농업인·농촌 주민의 생활용 에너지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98
㉛ 농업인·농촌 주민 참여와 책임 하의 농촌개발·농촌자산 관리 체계 확립	100

○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103
㉓ “농안법” 전면 개정 및 “(가칭)도매시장법” 제정	105
㉔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 정비	107
㉕ 생산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추진	109
㉖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강화	111
㉗ 품목별 전국 단위 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	112
㉘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14
㉙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협력(연계) 강화	115
㉚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117
㉛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118
○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 확립	119
㉜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121
㉝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실시	123
㉞ 휴대 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위한 “관세법” 개정	125
㉟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식용·사료용)자급률 제고	127
㊱ 논농업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도입·실시	129
○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의 확립 방안	133
㊲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135
㊳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급체계 개선	138
㊴ 농업·농촌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139
㊵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140
㊶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141
㊷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관리·추진체계 정비	143
㊸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 환경보전형 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	145

○ 7천만 민족이 주인 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 구축	147
⑤③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농업·농촌 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	149
⑤④ 취약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 내실화	151
⑤⑤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간 협력·교류 활동 지원 강화	153
⑤⑥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식량·농자재 지원, 기술·유전자원 교류 확대)	154
○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	155
⑤⑦ 농업·농촌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157
⑤⑧ 취약 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 내실화	159
⑤⑨ 농업금융 시스템을 시장지향형·수요자 중심 체제로 개편	161
⑥⑩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체계로 개편	162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농정방향**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농정방향

□ “농업의 산업화” : 농업·농촌·농업인의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 상황¹⁾

- 이미 우리 농업·농촌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 시장개방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 UR 타결 20년, 한-칠레 FTA 비준 1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품목·축종간 분화, 농가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 속에서 농업 부문의 성장 정체와 소득 하락 현상이 매우 심각하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 여기에 기후·환경·식품안전·에너지·자원 측면의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 전체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 나아가 총인구의 정체·감소가 불가피한 속에서 저성장 시대로 돌입한 상황이다.
- 이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과 농업인이 처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소장은 “근대화 패러다임, 글로벌화, 식품제국²⁾ 상호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른바 “농업의 산업화³⁾” 현상이 가져온 총체적 폐단이라는 것이다.

1) 이 단락은 “생산주의농업에서 다기능농업으로-농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 황수철, 계간 농정연구 제58호에서 제기된 논의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2) 식품제국(food empire)은 글로벌화 프로젝트로 거대 농식품 복합기업의 세계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현상을 뜻한다. 여기서 언급되는 “제국”의 개념은, 네그리·하트의 공저 “제국(2001)”에서 참조한 것이다.

3) 식량작물, 청과(과실, 과채, 채소류 등), 축산, 특작을 망라한 농업 생산 전 분야에 있어,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장을 소유하고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농업 생산 전·후방 분야를 실질적으로 “포위”하고 있는 국·내외 대자본의 이윤 극대화와 위험 최소화(자연 조건에 의해 풍흉이 좌우되는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제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한국의 농업 산업화에 관한 연구 :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송인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참조

- 이는 300만 농업인, 나아가 14만 한농연 회원(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까지 연결된다.

○ “농업의 산업화”의 양상과 그 파괴적 결과는 무엇인가?

- 우선, 농업 생산의 전방(가공·유통업)·후방(농자재산업 등)을 장악(포위)한 국내·외 거대 자본은 농업 생산부문에 직접 진출까지 시도함으로써, 지역·품목별 핵심 농업경영인(한농연 회원) 중심의 현행 농업생산구조를 붕괴시키고 “농업자본가-농업노동자(비숙련·단순 노동인력)”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경종·축산·원예·특작 등 농업 생산 전 부문에서 진행된 규모화, 전문화, 집약화(농업의 산업화)로 인한 생태·환경 파괴와 농촌 공동체의 약화·붕괴 현상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 나아가 규제역·AI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확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성찰해야 할 것이다.

○ 전국의 농지와 농촌 공간은 행정복합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의 개발 광풍에 휩쓸려,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노린 부재지주의 손에 상당 부분 넘어간 상태다.

- 생산 공간인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은 높은 지가와 임차료 부담에 허덕이고 있으며, 농촌 공간은 원칙 없는 난개발로 돌이킬 수 없도록 파괴되었다.
- 대다수의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은 농지와 농촌 공간을 주체적으로 관리·보호할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그 주도권을 부재지주와 국내·외 거대 자본에 빼앗긴지 오래다.

□ 아울러 300만 농업인들이 직면한 “2중의 고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고령화·과소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기초적·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사회 서비스가 극도로 취약해지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농어촌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첫 번째 고립)
- 나아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전략산업이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이 정부와 정치권 등 비농업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농업예산의 편성·집행은 물론 농업·농촌정책과 관련한 정치사회적 “홀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고립)
 - 이는 곧 300만 농업인, 14만 한농연 회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산업적 시민권”⁴⁾을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정부 농정 4년에 대한 평가

-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민공감농정위원회”를 통해 논의·검토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5대 분야 100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4) “산업적 시민권”은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제기한 개념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서 사회복지체제의 발전과 당위성을 이론화한 사회학자 T.H. 마샬은, 보편적 인권을 기초로 시민권 개념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사회가 경제 발전의 결과로 획득하게 되는 성과를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생활을 위해 분배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권리로 발전해 왔다”고 말한다.

나아가 1980년대 초 사회학자 안소니 기든스는 “산업적 권리가 시민권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 부문의 작업 현장에서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측과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1970~80년대를 통하여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사회협력적인 “사회적 코포라티즘”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의 개념을 응용·확장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산업적 시민권”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농업인의 자주적인 역량과 요구로 만들어진 농업인단체(결사체)가 농업인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고 ▲정부와 비농업계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고 농업·농촌정책 및 통상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면서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농업·농촌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명시적·암묵적인 “사회협약(예 :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에 명시된 상호준수의무 조항)” 혹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최장집의 ‘경제민주화 담론’ 비판...“산업적 시민권을 요구하자”』, 2016년 12월 29일 인터넷 언론 프레스안에 기고한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참조·인용

- “효율성에 기초한 창조, 소통, 배려의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직화·규모화와 함께 첨단과학 기술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식량을 확보하고 수출 농업을 지향하는 한편, 6차산업화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 고령농을 배려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농정은 생명산업인 동시에 국민들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농업과 농촌이 가진 본질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지역과 산업, 사람이 어우러지는 종합농정을 지향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과 농가의 유형별 맞춤형 농정, 정부 3.0과 자조·자립을 기반으로 하는 협업농정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⁵⁾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농정 성과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못하다.
- 한농연이 2017년 3월 실시한 “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농정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4%가 불만족을 표시하였으며, 5점 만점 기준 1.55점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집 내 첨부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 참조)
- 위에서 확인한 한농연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는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2일자 보도 내용⁶⁾과도 일맥상통한다.
- 당시 농업전문가 20인은 박근혜 농정 성과에 10점 만점에 6점을 매겼다.
 - 그 이유로 ▲농업·농촌·농민의 중장기 비전이 없이 경쟁력 지상주의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일관했으며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완전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 안정,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소홀했다는 평가도 제기되었다.
- 박근혜 정부가 6차산업화와 첨단과학 기술(스마트팜 등)을 통한 경쟁력

5) 여기까지의 내용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머리말에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2015. 10

6) “[창간 36주년 특집] 농정 전문가 20인에 듣는다”,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4월 12일자

제고와 소득 증대를 꾀했지만, 농가소득 및 생산(경영)비 부담 증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농업인들의 현실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다.

- 작년 여름 LG CNS의 새만금 간척지 스마트팜 파동으로 나타났듯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허용(기정사실화)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농업계의 날선 비판만을 초래하기도 했다.7)

○ 농업의 6차산업화 방침 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다양한 주체(여성, 농협 등)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역량이 부족한 귀농·귀촌인과 개별 생산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형되어 추진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8)

□ 농업·농촌·농민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작년 말 불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본격화되어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성난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시민 공동체를 회복·재건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혁신시키는 일”일 것이다.

○ 이같은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의 산업화”로 초래된 농업·농촌·농민의 총체적 위기의 극복 방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농업·농촌 및 300만 농업인에게 갖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살펴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7) “LG CNS 새만금사업 전격 철회 "한숨 돌렸지만..."-농업관련 핵심 규제 철폐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계류중”, 한국농어민신문 2016년 9월 27일자

8) “농업을 넘어 지역과 함께, 농촌경제의 새로운 틀을 짜자”, 서정민, 지역재단 농정대연구 제1차 공개포럼 자료집, 2016. 3. 25, p.92~93 참조

-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경쟁력 지상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농정”을 반드시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 근본적 (Radical)으로 개편해야만 한다.
 - 그 이유는 명백하다. ▲향후 생산가능인구 및 총인구의 정체·감소가 불가피할뿐더러 ▲이미 WTO·FTA로 농축산물 시장이 완전개방된 현 상황에서 ▲경제·사회·생태·환경 전반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기존의 농업성장 전략은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절대로 관철·성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14만 한농연 회원 나아가 300만 농업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산업적 기본권”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담보하려면 최근 추진중인 헌법 개정 작업시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국민·농업인 모두의 상호준수의무 (Cross-Compliance)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야만 한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부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농업·농촌·농업인 부문의 3대 핵심 혁신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의 농업생산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 및 전후방 산업에서의 독과점적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 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가족농 구조의 유지·발전을 담보할 수 있게끔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확립·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 둘째, 농업인들의 “자조와 연대”의 정신을 견고히 하여 “파괴된 농촌 환경과 공동체의 회복”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주로 도시 소비자·납세자), 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헌법 개정안은 물론 개별 법률에 명확히 하여 직불제를 포함한 다양한 농업·

농촌 지원 정책이 확립·시행되게끔 해야 한다.

-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농업(전후방 산업 포함)의 근본적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촌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를 통하여 300만 농업인이 ▲중앙·지역 단위의 농업정책은 물론 농촌(농지 및 농촌 자연 생태환경 포함)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셋째, 5천만 국민, 7천만 민족 전체가 농업·농촌 및 농업정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농업” 나아가 “통일농업”을 지향해야 한다.

- 지금까지 농업계(농식품부, 농협, 농업인단체 등)에서 통용돼 온 “국민농업” 개념은, 농업예산의 증액과 농업·농촌정책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민(주로 도시 소비자·납세자)”들을 “수동적 개체”로 “호명”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 이 속에서 “국민”은 스스로가 원하는 한국 농업·농촌의 역할과 미래 가치·중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 채, 심화되는 청년 실업 및 경제 양극화 속에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의 “수동적 소비자·납세자”로 소외되어 온 것이다.
- 앞으로의 “국민농업”은 ▲위와 같은 지난날의 과오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생산자(농업인)과 소비자·납세자(도시민)가 공감·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기조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지금까지 쌀을 포함한 각종 농자재, 관행농법 중심의 농업기술 일부 지원에 국한되었던 “통일농업”의 실천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활동을 보다 다양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및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 확립을 전제로,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협력활동 ▲남북한 유전자원

공동조사·수집 활동 ▲북한 농업생산 및 전후방 산업 인프라의 복구·발전 방안 등을 국제사회와의 협력·공조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한농연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 한농연은 2017년 4월 13일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농업·농촌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농정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 전국의 14만 한농연 회원 및 250만 농업인이 모이는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유력 대선 후보들의 농업·농정관은 물론 각 정당의 농정공약을 비교·평가하고 한농연의 핵심 농정공약을 공론화하고 새로운 정부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고자 한다.
-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 인구 중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 핵심 영농 세력인 한농연은, 우리 스스로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생태환경적 모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면을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여 책임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 “변화의 새로운 방향과 근거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갖고 한농연은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박근혜 정부 4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4년 농정 평가 설문조사 결과

- 한농연 '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

I. 기초 인적사항 조사

- 설문 응답자의 한농연 내 직책으로는 시·군구 임원이 53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도 임원 36명(35.0%), 기타 14명(13.6%) 순으로 나타났음. 응답자 전체 103명 중 시·도 및 시·군·구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86.5%임.
- 설문 응답자의 주작목으로는 식량작물(벼 포함)이 51명(4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작류 16명(13.4%), 한우 15명(12.6%), 채소류 11명(9.2%)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설문 응답자의 영농 종사 기간은 20년 이상이 85명(82.5%)으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5~20년이 10명(9.7%), 10~15년이 3명(2.9%), 5~10년이 3명(2.9%) 순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 응답자의 영농 지역은 전남이 38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북 24명(23.3%), 경기 12명(11.7%), 경남 11명(10.7%), 강원 7명(6.8%) 외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표본의 기초 인적사항 조사 결과

항 목		응 답 수(명)	구성비율(%)	
기 초 인 적 사 항 조 사	한 농 연 내 직 책	시도임원(회장,부회장,감사)	36	35.0
		시군구임원(회장,부회장,감사)	53	51.5
		기타	14	13.6
		합계	103	100.0
주 작 목 ⁹⁾	주 작 목 ⁹⁾	식량작물(벼포함)	51	42.9
		한우	15	12.6
		양돈	3	2.5
		낙농육우	2	1.7

		육계산란계	1	0.8
		과실류	9	7.6
		채소류	11	9.2
		특작류	16	13.4
		기타	10	8.4
		무응답	1	0.8
		합계	119	100.0
영 농 종 사 기 간	5년미만	1	1.0	
	5-10년	3	2.9	
	10-15년	3	2.9	
	15-20년	10	9.7	
	20년 이상	85	82.5	
	무응답	1	1.0	
	합 계	103	100.0	
영 농 지 역	경기	12	11.7	
	강원	7	6.8	
	충남	1	1.0	
	전남	38	36.9	
	경북	24	23.3	
	경남	11	10.7	
	제주	2	1.9	
	인천	3	2.9	
	광주	1	1.0	
	대전	3	2.9	
	울산	1	1.0	
	합계	103	100.0	

자료 : 한농연 제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예비 설문조사 결과

9) 주작목 응답자 수는 주작목 1과 주작목2를 중복 합산한 결과임.

II. 박근혜 정부 농정 평가 및 차기 정부 농정 관련 설문

1.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농정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농정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57명(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특히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4%가 농정에 불만족 하였으며, 5점 만점 기준 1.55점으로 나타남.

[표2-1] 박근혜 정부 전반적 농정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	5점 척도
응답수	57명	37명	7명	2명	0명	103명	1.55점
비율	55.3%	35.9%	6.8%	1.9%	0.0%	100.0%	

2. 박근혜 정부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근혜 정부 취임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 평가는 매우 낙후가 46명(44.7%), 낙후가 37명(35.9%)으로, 박근혜 정부 이후 경영환경 및 농업 정책 방향이 낙후되었다는 평가가 전체 대비 9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5점 만점 기준 1.78점으로 조사되었음.

[표2-2] 박근혜 정부 취임 전후 농가 경영환경 및 농업정책 방향 비교

구 분	매우 낙후	낙후	보통	개선	매우 개선	계	5점 척도
응답수	46명	37명	17명	3명	0명	103명	1.78점
비율	44.7%	35.9%	16.5%	2.9%	0.0%	100.0%	

3.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농정공약이 66명(6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덕성 및 인물이 36명(35.0%)으로 조사되었음.

[표2-3]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지지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구 분	농정공약	도덕성 및 인물	소속 정당	출신 지역	무응답	계
응답수	66명	36명	0명	0명	1명	103명
비율	64.0%	35.0%	0.0%	0.0%	1.0%	100.0%

4.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는 무엇입니까?

-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에 대해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설문한 결과 1순위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2순위로는 농업예산 확대 편성 및 공익형 직불제 지원 대폭 강화, 3순위로는 2순위와 마찬가지로 농업예산 확대 편성 및 공익형 직불제 지원 대폭 강화로 조사되었음.
- 반면, 1, 2, 3순위로 지목한 농정분야를 모두 종합해 본 결과 1순위로 농업예산 확대 편성 및 공익형 직불제 지원 대폭 강화, 2순위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3순위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 순으로 나타났음.

[표2-4]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농정분야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중복계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37명 (35.9%)	15명 (14.6%)	7명 (6.8%)	59명 (19.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인력정책 일원화	9명 (8.7%)	16명 (15.5%)	17명 (16.5%)	42명 (13.6%)
농업예산 확대 편성 및 공익형 직불제 지원 대폭 강화	26명 (25.2%)	25명 (24.3%)	19명 (18.4%)	70명 (22.7%)
경제사업연합회,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등 농협법 개정	0명 (0.0%)	4명 (3.9%)	4명 (3.9%)	8명 (2.6%)
교육, 의료, 교통 등 농업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정책	2명 (1.9%)	9명 (8.7%)	14명 (13.6%)	25명 (8.1%)
산지조직화, 도소매 유통단계 효율화 등 농산물 유통정책	3명 (2.9%)	4명 (3.9%)	16명 (15.5%)	23명 (7.4%)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 도입	18명 (17.5%)	15명 (14.6%)	12명 (11.7%)	45명 (14.6%)
지방농정 역량 강화를 포함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2명 (1.9%)	8명 (7.8%)	8명 (7.8%)	18명 (5.8%)
기 타	1명 (1.0%)	1명 (1.0%)	0명 (0.0%)	2명 (0.6%)
무응답	5명 (4.9%)	6명 (5.8%)	6명 (5.8%)	17명 (5.5%)
합 계	103명 (100.0%)	103명 (100.0%)	103명 (100.0%)	309명 (100.0%)

III. 박근혜 정부 세부 농정 평가

[표 3-1] 박근혜 정부 8대 농정분야에 대한 종합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순 위
국제통상 분야	125 (30.3%)	174 (42.2%)	81 (19.7%)	11 (2.7%)	8 (1.9%)	13 (3.2%)	412 (100.0%)	2.005점	8
양곡정책 분야	95 (23.1%)	155 (37.6%)	85 (20.6%)	22 (5.3%)	5 (1.2%)	23 (5.6%)	412 (100.0%)	2.06점	7
농·축협 관련 정책	57 (13.8%)	137 (33.3%)	168 (40.8%)	23 (5.6%)	6 (1.5%)	21 (5.1%)	412 (100.0%)	2.45점	2
농업인 삶의 질 정책	80 (19.4%)	168 (40.8%)	118 (28.6%)	21 (5.1%)	1 (0.2%)	24 (5.8%)	412 (100.0%)	2.21점	5
농업인력 정책	52 (12.6%)	126 (30.6%)	176 (42.7%)	21 (5.1%)	10 (2.4%)	25 (6.1%)	412 (100.0%)	2.51점	1
농산물 유통정책	112 (27.2%)	123 (29.9%)	126 (30.6%)	10 (2.4%)	5 (1.2%)	36 (8.7%)	412 (100.0%)	2.13점	6
식품산업 정책	61 (14.8%)	144 (35.0%)	149 (36.2%)	21 (5.1%)	3 (0.7%)	34 (8.3%)	412 (100.0%)	2.37점	3
농업생산 지원 정책 및 농정 추진체계	86 (20.9%)	152 (36.9%)	119 (28.9%)	20 (4.9%)	3 (0.7%)	32 (7.8%)	412 (100.0%)	2.22점	4

주) 각 분야별로 4가지 세부 현안에 대한 설문응답을 종합한 결과임(103×4).

[표 3-2] 세부 현안별 최하위 5순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순 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파급 영향	62명 (60.2%)	19명 (18.4%)	10명 (9.7%)	1명 (1.0%)	2명 (1.9%)	9명 (8.7%)	103명 (100.0%)	1.53점	1
공공비축제 및 수확기 시장격리미 매입 정책	49명 (47.6%)	31명 (30.1%)	16명 (15.5%)	0명 (0.0%)	2명 (1.9%)	5명 (4.9%)	103명 (100.0%)	1.72점	2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문제 관련 농식품부 국회의 노력	30명 (29.1%)	43명 (41.7%)	19명 (18.4%)	5명 (4.9%)	0명 (0.0%)	6명 (5.8%)	103명 (100.0%)	1.99점	3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27명 (26.2%)	52명 (50.5%)	17명 (16.5%)	3명 (2.9%)	1명 (1.0%)	3명 (2.9%)	103명 (100.0%)	1.99점	4
농어촌 의료체계 관련 정책	29명 (28.2%)	41명 (39.8%)	25명 (24.3%)	2명 (1.9%)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00점	5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005점으로 나타났음. 불만족이 174명(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125명(30.3%)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72.5%에 달하고 있음.
-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39명(37.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35명(34.0%)으로 전체의 71.9%가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이행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상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52명(50.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7명(26.2%)으로 전체의 76.6%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5명(43.7%)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30명(29.1%)으로 전체의 72.8%가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38명(36.9%)으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불만족이 33명(32.0%)으로 나타나 전체의 68.9%가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

[표 3-3] 정부의 “국제통상”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이행	35명 (34.0%)	39명 (37.9%)	19명 (18.4%)	4명 (3.9%)	3명 (2.9%)	3명 (2.9%)	103명 (100.0%)	2.01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 농업분야 협상 결과	27명 (26.2%)	52명 (50.5%)	17명 (16.5%)	3명 (2.9%)	1명 (1.0%)	3명 (2.9%)	103명 (100.0%)	1.99점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30명 (29.1%)	45명 (43.7%)	21명 (20.4%)	2명 (1.9%)	2명 (1.9%)	3명 (2.9%)	103명 (100.0%)	2.01점
FTA 협상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	33명 (32.0%)	38명 (36.9%)	24명 (23.3%)	2명 (1.9%)	2명 (1.9%)	4명 (3.9%)	103명 (100.0%)	2.01점
합 계	125 (30.3%)	174 (42.2%)	81 (19.7%)	11 (2.7%)	8 (1.9%)	13 (3.2%)	412 (100.0%)	2.005점

2. 정부의 “양곡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양곡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06점으로 나타났음. 불만족이 155명(3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95명(23.1%)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70.7%에 달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쌀 대란에 대한 현장 농업인의 감정을 반영하듯 공공비축제 및 수확기 시장격리미 매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1.7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공공비축제 및 수확기 시장격리미 매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49명(47.6%)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31명(30.1%)으로 불만족 비율이 77.7%에 달하고 있음.
 -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0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5명(34.0%)으로 불만족 비율은 52.4%로 집계됨.
 - 과잉 재고 처리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9명(28.2%)로 불만족 비율이 68.0%로 나타남.
 -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문제 관련 농식품부와 국회의 노력 여부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3명(4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30명(29.1%)로 불만족 비율이 70.8%로 조사되었음.

[표 3-4] 정부의 “양곡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공공비축제 및 수확기 시장격리미 매입 정책	49명 (47.6%)	31명 (30.1%)	16명 (15.5%)	0명 (0.0%)	2명 (1.9%)	5명 (4.9%)	103명 (100.0%)	1.72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련 정책(고정·변동직불금)	14명 (13.6%)	40명 (38.8%)	35명 (34.0%)	8명 (7.8%)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38점
과잉 재고 처리 정책	29명 (28.2%)	41명 (39.8%)	15명 (14.6%)	9명 (8.7%)	3명 (2.9%)	6명 (5.8%)	103명 (100.0%)	2.13점
쌀 생산조정제 도입 문제 관련 농식품부·국회의 노력	30명 (29.1%)	43명 (41.7%)	19명 (18.4%)	5명 (4.9%)	0명 (0.0%)	6명 (5.8%)	103명 (100.0%)	1.99점
합 계	95 (23.1%)	155 (37.6%)	85 (20.6%)	22 (5.3%)	5 (1.2%)	23 (5.6%)	412 (100.0%)	2.06점

3. 정부의 “농·축협 관련 정책”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농·축협 관련 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45점으로 나타났음. 보통이 168명(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137명(33.3%)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47.1%로 집계됨.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42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7명(35.9%)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1.5%로 집계됨.
- 농협법 개정(중앙회장 선출방식, 축산경제특례 유지 문제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7명(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28명(27.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4.7%로 집계됨.
- 조합장 선거 관련 정책(농협법, 공공기관 위탁선거법 등과 관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3명(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29명(28.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5.7%로 집계됨.
- 농·축협 관련 정보공개, 조합원 교육 내실화, 조합원 정예화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38명(36.9%)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6.6%로 집계됨.

[표 3-5] 정부의 “농·축협 관련 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추진 성과	11명 (10.7%)	42명 (40.8%)	37명 (35.9%)	5명 (4.9%)	2명 (1.9%)	6명 (5.8%)	103명 (100.0%)	2.43점
농협법 개정	18명 (17.5%)	28명 (27.2%)	47명 (45.6%)	3명 (2.9%)	2명 (1.9%)	5명 (4.9%)	103명 (100.0%)	2.42점
조합장 선거 관련 정책	18명 (17.5%)	29명 (28.2%)	43명 (41.7%)	7명 (6.8%)	1명 (1.0%)	5명 (4.9%)	103명 (100.0%)	2.43점
농·축협 관련 정보공개 조합원 정예화 관련	10명 (9.7%)	38명 (36.9%)	41명 (39.8%)	8명 (7.8%)	1명 (1.0%)	5명 (4.9%)	103명 (100.0%)	2.51점
합 계	57 (13.8%)	137 (33.3%)	168 (40.8%)	23 (5.6%)	6 (1.5%)	21 (5.1%)	412 (100.0%)	2.45점

4. 정부의 “농업인 삶의 질 정책”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농업인 삶의 질 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00점으로 나타났음. 불만족이 168명(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118명(28.6%)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68.0%로 집계됨.

- 농어촌 의료체계(응급의료체계, 산부인과, 공중보건의 배치 등)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9명(28.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68.0%로 집계됨.
- 농어촌 교육 분야(농어촌 학교 통·폐합, 농어촌특별전형 등)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8명(46.6%), 다음으로 보통이 25명(24.3%)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66.0%로 집계되었음.
- 농어촌 노인 등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0명(29.1%)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6.3%로 집계되었음.
-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과 보통이 38명(36.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14명(13.6%)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0.5%로 집계되었음.

[표 3-6] 정부의 “농업인 삶의 질 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농어촌 의료체계 관련 정책	29명 (28.2%)	41명 (39.8%)	25명 (24.3%)	2명 (1.9%)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00점
농어촌 교육 분야 관련 정책	20명 (19.4%)	48명 (46.6%)	25명 (24.3%)	3명 (2.9%)	1명 (1.0%)	6명 (5.8%)	103명 (100.0%)	2.14점
농어촌 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정책	17명 (16.5%)	41명 (39.8%)	30명 (29.1%)	9명 (8.7%)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32점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	14명 (13.6%)	38명 (36.9%)	38명 (36.9%)	7명 (6.8%)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39점
합 계	80 (19.4%)	168 (40.8%)	118 (28.6%)	21 (5.1%)	1 (0.2%)	24 (5.8%)	412 (100.0%)	2.21점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51점으로 나타났음. 보통이 176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126명(30.6%)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43.2%로 집계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이 44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33명(32.0%)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0.7%로 집계 되었음.
- 귀농·귀촌 제도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36명(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이 26명(25.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60.2%로 집계되었음.
- 농업인 교육 정책(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멘토링 관련) 만족도는 보통이 53명(5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29명(28.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34.0%로 집계되었음.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관련(선발 규모, 관리체계 등)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이 50명(4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28명(27.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37.9%로 집계되었음.

[표 3-7]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관련	9명 (8.7%)	33명 (32.0%)	44명 (42.7%)	8명 (7.8%)	3명 (2.9%)	6명 (5.8%)	103명 (100.0%)	2.62점
귀농·귀촌 제도 관련	26명 (25.2%)	36명 (35.0%)	29명 (28.2%)	6명 (5.8%)	0명 (0.0%)	6명 (5.8%)	103명 (100.0%)	2.15점
농업인 교육 정책	6명 (5.8%)	29명 (28.2%)	53명 (51.5%)	4명 (3.9%)	4명 (3.9%)	7명 (6.8%)	103명 (100.0%)	2.67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관련	11명 (10.7%)	28명 (27.2%)	50명 (48.5%)	5명 (4.9%)	3명 (2.9%)	6명 (5.8%)	103명 (100.0%)	2.60점
합 계	52 (12.6%)	126 (30.6%)	176 (42.7%)	21 (5.1%)	10 (2.4%)	25 (6.1%)	412 (100.0%)	2.51점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13점으로 나타났음. 보통이 126명(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123명(29.9%)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57.1%로 집계됨.

- 산지유통 지원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0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4명(33.0%)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6.3%로 집계 되었음.
-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정부의 도매유통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0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5명(34.0%)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6.3%로 집계 되었음.
-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지정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의 만족도는 보통이 47명(4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4명(23.3%)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36.9%로 집계 되었음.
-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과급 영향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이 62명(6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19명(18.4%)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78.6.%로 집계 되었음.

[표 3-8]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산지유통 지원정책	18명	40명	34명	1명	1명	9명	103명	2.22점
	(17.5%)	(38.8%)	(33.0%)	(1.0%)	(1.0%)	(8.7%)	(100.0%)	
공영도매시장을 포함한 정부의 도매유통 관련 정책	18명	40명	35명	1명	0명	9명	103명	2.20점
	(17.5%)	(38.8%)	(34.0%)	(1.0%)	(0.0%)	(8.7%)	(100.0%)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지정 관련 정부·지자체 정책	14명	24명	47명	7명	2명	9명	103명	2.56점
	(13.6%)	(23.3%)	(45.6%)	(6.8%)	(1.9%)	(8.7%)	(100.0%)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과급 영향	62명	19명	10명	1명	2명	9명	103명	1.53점
	(60.2%)	(18.4%)	(9.7%)	(1.0%)	(1.9%)	(8.7%)	(100.0%)	
합 계	112	123	126	10	5	36	412	2.13점
	(27.2%)	(29.9%)	(30.6%)	(2.4%)	(1.2%)	(8.7%)	(100.0%)	

- 한편, 공영도매시장 내 거래 제도와 관련하여 농업인(출하자)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인가의 질문에는 무응답을 제외한 표본수 중 상장거래제도(기존 경매제 및 정가수의거래)가 35명(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르겠다 17명(16.5%), 시장도매인제(기존 위탁상 제도와 유사)가 5명(4.9%)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3-7]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의견

구 분	상장거래제	시장도매인제	모르겠다	기타 의견	무응답	계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에 대한 의견	35명 (34.0%)	5명 (4.9%)	17명 (16.5%)	4명 (3.9%)	42명 (40.8%)	103명 (100.0%)

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37점으로 나타났음. 보통이 149명(3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144명(35.0%)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49.8%로 집계됨.
 - 관세청의 휴대용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관련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37명(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3명(32.0%)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1.4%로 집계 되었음.
 - GMO표시제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의 만족도는 불만족이 40명(3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7명(26.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5.3%로 집계 되었음.
 -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강화 노력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4명(4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37명(35.9%)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6.6%로 집계 되었음.
 -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5명(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만족이 30명(29.1%)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45.6%로 집계되었음.

[표 3-9]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관세청의 휴대용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관련 정책	16명 (15.5%)	37명 (35.9%)	33명 (32.0%)	8명 (7.8%)	0명 (0.0%)	9명 (8.7%)	103명 (100.0%)	2.35점
GMO표시제 관련 사항	17명 (16.5%)	40명 (38.8%)	27명 (26.2%)	8명 (7.8%)	2명 (1.9%)	9명 (8.7%)	103명 (100.0%)	2.34점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 체제 구축 강화노력	11명 (10.7%)	37명 (35.9%)	44명 (42.7%)	3명 (2.9%)	0명 (0.0%)	8명 (7.8%)	103명 (100.0%)	2.41점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17명 (16.5%)	30명 (29.1%)	45명 (43.7%)	2명 (1.9%)	1명 (1.0%)	8명 (7.8%)	103명 (100.0%)	2.37점
합 계	61 (14.8%)	144 (35.0%)	149 (36.2%)	21 (5.1%)	3 (0.7%)	34 (8.3%)	412 (100.0%)	2.37점

8.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 정책 및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아래에 제시한 4가지의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 정책 및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를 합산한 결과 5점 만점 기준 2.22점으로 나타났음. 불만족이 152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119명(28.9%)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전체의 57.8%로 집계됨.

-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적용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38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9명(28.2%)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55.3%로 집계 되었음.
-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공급체계 및 각종 규제 정책 관련 만족도는 불만족이 38명(3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불만족과 보통이 25명(24.3%)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비율은 61.2%로 집계 되었음.
-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 정책 관련 만족도는 불만족이 35명(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2명(31.1%)으로 나타남. 불만족 비율은 57.3%로 집계 되었음.
- 지방농정의 혁신·발전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관련 만족도는 불만족이 41명(3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33명(32.0%)으로 나타남. 불만족 비율은 57.3%로 집계 되었음.

[표 3-10]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 및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무응답	계	5점 척도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용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적용	19명 (18.4%)	38명 (36.9%)	29명 (28.2%)	8명 (7.8%)	1명 (1.0%)	8명 (7.8%)	103명 (100.0%)	2.31점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공급 체계 및 각종 규제 정책 관련	25명 (24.3%)	38명 (36.9%)	25명 (24.3%)	5명 (4.9%)	2명 (1.9%)	8명 (7.8%)	103명 (100.0%)	2.17점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 정책 관련	24명 (23.3%)	35명 (34.0%)	32명 (31.1%)	4명 (3.9%)	0명 (0.0%)	8명 (7.8%)	103명 (100.0%)	2.17점
지방농정의 혁신·발전을 위한 농정추진체계 개선 관련	18명 (17.5%)	41명 (39.8%)	33명 (32.0%)	3명 (2.9%)	0명 (0.0%)	8명 (7.8%)	103명 (100.0%)	2.22점
합 계	86 (20.9%)	152 (36.9%)	119 (28.9%)	20 (4.9%)	3 (0.7%)	32 (7.8%)	412 (100.0%)	2.22점

<기타 대선공약 관련 의견 작성 조사 결과¹⁰⁾>

- 중복 의견은 삭제 -

1. 정부의 ‘국제 통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대북 쌀 지원을 빠른 시일내에 재개(북한 광물과의 쌀 맞교환 등)
- FTA협상 과정에서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 줄 것을 당부.
- 농업인 단체의 의견 경청 및 반영, 협상 후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함
-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구체적 선 대책을 마련해야 함.

2. 정부의 ‘양곡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쌀 재고 처리에 대한 정부 시책 미흡, 대책 마련 필요
- 다수확 품종 재배 제한과 품질 좋은 종자개발을 통해 쌀 값 안정 도모
- 생산조정제 예산 투입을 통한 적정 생산 유지
- 허용보조금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함.
- 직접지불제 규모를 EU 수준으로 확대·시행
- 우량 농지 정량 매입과 무상임대 정책을 추진하여 투기 목적으로의 농지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함.
- 쌀가루 해외 원조를 확대 해야 함.
-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정책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식량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쌀 재고 방안의 다각적 연구가 필요함
- 쌀 작물별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해 쌀 고정직불금을 인상하고 쌀 농업 변동직불금을 도입해야 함
- 쌀 작물 돌발 병충해 보상제도 도입필요
- 남북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확보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면적을 완화시키고 현 지정 품목보다 다양화해야 함

3. 정부의 ‘협동조합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조직 이익 증진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의 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함
- 조합원 환원사업 확대
- 일선 회원조합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10) 기타 대선공약 관련 의견 작성 조사 결과는 한농연 제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수립을 위한 예비 설문조사와 한농연 핵심 지도자교육시 대선 농정공약 분임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결과물임.

4.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농촌의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 필요
- 농어촌 노인 기초생활 보장제도 보강
- 복지혜택 강화 및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 등에게 수당 도입
- 농업인의 문화생활(면단위 행사 및 교육 등) 보강 등 삶의 질 여건 개선
- 응급의료시설을 포함한 읍·면별 24시간 운영 보건소 운영
- 농한기 일자리 창출 노력
- 도시근교 농업인들도 의료보험료,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 등 농업경영인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요구함.
-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이주 농가 방지

5. 정부의 ‘농업인력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 지원 요청
- 실질적인 영농의사, 연령 등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등 우수 농업인 지원제도를 정비
- 후계농, 승계농 등에게 토지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함
- 후계농이 효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함
-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농업경영인퇴직금제도, 금리 인하 및 상환 조건 장기화 등)
- 서류에 의존하는 후계인력 선발 기준 비율을 완화하고 실제 시·군 회장의 추천서를 반영해야 함.
- 농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귀농·귀촌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육성과 계절적 고용허가제 및 승계 농 세계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

6.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친환경농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중소농가의 활성화와 경영기법 유도가 필요
- 정가수의매매 제도의 정착화
- 김영란법에 대한 농업인 의견 대폭 반영 및 농림부의 대국민 설득 작업 병행
- 주산단지에 대형 유통망 건립
- 직거래 방식 및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등 유통 경로 최소화 노력 필요
- 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코너 설치 의무화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법 신설

7. 정부의 ‘식품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통한 국내산 농산물과 Non GMO 제품의 차별화 시스템 구축
- 쌀 가공품의 경우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함유량 50% 이상 사용시 제품에 표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정부의 ‘농업생산 지원 정책 및 농정추진체계’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 의견

- 생산비 절감 대책 강화
- 농기계 가격은 현행 수준에서 15%이상 인하가 필요함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절감 대책이 필요함.

9. 기타 의견.

- 농업 관련 모든 정책 기획에 있어 최소한 10년 이상은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과 승계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농업인 퇴직금 제도 도입
-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품목별 전국단위 조직화로 농민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함.
- 수도권외의 경우 인구가 집중되어 유효수요가 많은 지역이지만 상수도, 군사지역 등 제한지역이 많음. 농업적 이용을 전제로한 규제완화 필요
- 환경개선부담금을 농업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
- 신재생에너지 관련 농업인에게 3kw 태양광발전 지원
- 농업인면허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의 전문성을 확보
- 대통령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
- 농업회의소 신설 필요.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한농연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10대 농정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결맞는 정치적 위상 확립	①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② 미국식 “농업법” 체제 도입을 통한 5년 단위 농정 추진계획 법제화 ③ “통상절차법” 개정으로 통상협상시 농업인의 요구사항 반영 의무화 ④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소유·이용·보전 제도 전면 정비 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농업계 직능 대표의 공천 의무화 ⑥ 농어촌 대표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재조정 ⑦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운영 ⑧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 일원화 ⑪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 존치·확대 ⑫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⑬ 제도권 및 민간 차원의 농업인 교육·훈련 시스템 전면 혁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의 정비·확충 방안	⑭ 전체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⑮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 ⑯ 밭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인상 및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 지급 ⑰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⑱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개선
민주적·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농협 개혁 방안	⑲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⑳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㉑ 농·축협 조합원 정예화를 포함한 민주적·책임경영 체제 강화 ㉒ 농·축협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조합원 교육 내실화 ㉓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㉔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조합장·임원 선거 제도 개선

<p>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개발 정책 발전 방안</p>	<p>㉔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p> <p>㉕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p> <p>㉖ 고령자를 포함한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제도 확충·정비</p> <p>㉗ 학습권 보장,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개선 방안</p> <p>㉘ 주민 접근성 강화 및 예방적 의료 강화를 위한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p> <p>㉙ 농업인·농촌 주민의 생활용 에너지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p> <p>㉚ 농업인·농촌 주민 참여와 책임 하의 농촌개발·농촌자산 관리 체계 확립</p>
<p>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 선</p>	<p>㉛ “농안법” 전면 개정 및 “(가칭)도매시장법” 제정</p> <p>㉜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 정비</p> <p>㉝ 생산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추진</p> <p>㉞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강화</p> <p>㉟ 품목별 전국 단위 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p> <p>㊱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p> <p>㊲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협력(연계) 강화</p> <p>㊳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p> <p>㊴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p>
<p>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 확립</p>	<p>㊵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p> <p>㊶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실시</p> <p>㊷ 휴대 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위한 “관세법” 개정</p> <p>㊸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식용,사료용) 자급률 제고</p> <p>㊹ 논농업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실시</p>
<p>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의 확립 방안</p>	<p>㊺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 대해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p> <p>㊻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급체계 개선</p> <p>㊼ 농업·농촌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p> <p>㊽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p> <p>㊾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p> <p>㊿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관리·추진체계 정비</p> <p>①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 환경보전형 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p>

<p>7천만 민족이 주인 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구축</p>	<p>⑤3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농업·농촌 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p> <p>⑤4 취약 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 내실화</p> <p>⑤5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간 협력·교류 활동 지원 강화</p> <p>⑤6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식량·농자재 지원, 기술·유전자원 교류 확대)</p>
<p>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p>	<p>⑤7 농업·농촌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영</p> <p>⑤8 자율·창의·책임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농정의 전면 혁신</p> <p>⑤9 농업금융 시스템을 시장지향형·수요자 중심 체제로 개편</p> <p>⑥0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체계로 재편</p>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한
한농연 제19대 대통령 선거
농정공약 요구사항

농정 기조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 확립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함
 -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에 반영된 농업·농촌 관련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명확히 하게끔 헌법을 개정해야 함
- 제10차 헌법 개정시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음
 -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무(농업예산 및 직불금 확대 편성 등)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명시
 - 5~10년 단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기본계획) 수립·집행의 근거 마련(미국 농업법 체계를 참조)
 -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원칙 강화, 농촌 공간의 활용 원칙 천명
 - 지속가능한 가족농 체제의 유지·발전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통상협상과 관련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의무화

제안 배경

-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비해 현행 헌법 내 관련 조항은 매우 부실함
 - 1987년 공포·시행중인 현행 제9차 개정 헌법에는 “제9장 경제”의 제119조~제127조가 농업·농촌 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이 중에서 특히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과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은 직접 연관되는 것임.

아울러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 또한 농업·농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항으로 판단됨

- 그런데 제123조(농어업의 보호·육성) 내 조항들은 ▲농업·농촌 관련 조항과 중소기업 관련 조항이 혼재돼 있어, 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농업·농촌의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정부)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이 선진국의 사례(아래의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 참조)와 비교했을 때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 올해 1월 5일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개특위)가 출범하여 11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안 검토에 돌입한 상태임
- 그런데 헌개특위가 구성·운영중인 자문위원단에는 한농연 등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전혀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 제121조 제1항의 경자유전의 원칙마저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 개정시 반드시 감안·반영되어야 할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 스위스 연방헌법 제104조(농업)

-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며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기여를 하도록 보장한다.
 - a. 국민에 대한 공급안보
 -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향토경관의 유지
 - c. 지역 분산적인 인구분포
- ② 연방은 농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호지원조치에 대한 보완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농민의 토지경작을 장려한다.
-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연방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a. 연방은 농민이 생태학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농업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전한다.
 - b. 연방은 경제적으로 유익한 장려책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및 가

축의 생산을 장려한다.

- c. 연방은 식료품의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d. 연방은 비료, 화학물질 및 기타 첨가물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예방한다.
 - e. 연방은 농업의 연구, 지도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 f. 연방은 농촌지역의 토지소유를 안정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연방은 이를 위하여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 및 연방의 일반 재원을 투자한다.

2) 미국식 “농업법” 체제 도입을 통해 5년 단위 농정 추진계획 법제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농촌 내외부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미국 농업법의 사례를 참조하여 매 5년~10년마다 개정·시행해야 함
 - 새로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미국 농업법과 같이 실질적으로 5년 단위 “농업·농촌 발전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 및 정책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안 배경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의 보호·육성과 관련한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어, 농업·농촌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써 작동하지는 못하는 구조임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에 규정된 선언적 내용 중 일부를 옮겨 헌법 제121조 및 제123조의 농업·농촌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강화하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향후 5~10년 동안 예상되는 농업·농촌 내외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담아내는 실행법 형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통해 ▲5~10년 단위 중기 농업예산의 예상 소요 및 집행 계획 ▲쌀을 포함한 핵심 곡물 및 농축산물의 자급률 목표치와 이의 달성 방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직불제, 농업재해보험, 수입보험 등) ▲농지 및 농촌환경 보전 정책 ▲농촌 내 유·무형 자원·자산 등의 활용 방안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및 농촌개발 정책 등의 큰 틀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통상절차법” 개정으로 통상협상시 농업인의 요구사항 반영을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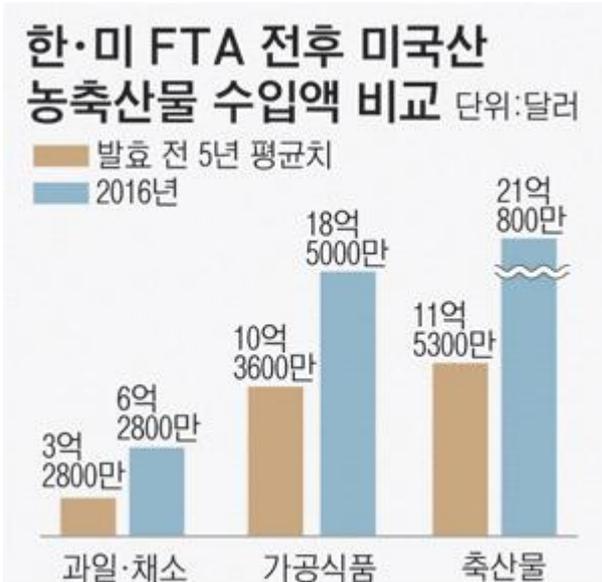
대선공약 요구사항

-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입장 및 요구사항이 통상협상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통상절차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함
 - 농어업인단체 대표(추천 전문가 포함) 등에게, 통상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책 자문·반영을 의무화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통상협상 관련 권한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과 같이 국회에서 통상협상(WTO, FTA 등)의 준비·추진 및 타결·비준·사후 평가 등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함
- 강대국들의 부당한 통상개방 요구에 농업·농촌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방식의 협상 및 타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함
 -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농업·농촌 분야의 부당한 협상 조건 및 피해에 대해 적극 항의해야 하며, 우리 농업·농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함
 -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출·판매를 부당하게 제약·방해하는 중국의 통상압력이 있을 경우, WTO 제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함

제안 배경

- 한-미 FTA 발효 5년 동안 축산물·과일 수입은 2배로 늘어나면서 농업·농촌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낳고 있음
 - 2016년 미국산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씩 늘었음. 미국이 가장 욕심을 냈던 축산물을 보면, 쇠고기가 3.4배(3억 100만 달러→10억 3,500만 달러), 치즈는 3배(5,600만 달러→1억 6,900만

달러), 분유는 14배(90만 달러→1,260만달러) 증가했음. 과일 역시 오렌지·체리·레몬이 2~4배씩 늘었으며, 특히 미국산 체리는 최근 3년 연속 1억 달러 넘게 국내에 수입되었음(아래 그림 참조. 출처 : “[팩트 체크]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진실은, 농민신문 2017. 3. 24 1면 기사 참조)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015년 수출 61억 달러, 수입 301억 달러로 240억 달러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한국의 대미국 수출 총액의 33%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및 부품 대미 수출 총액 22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 많은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대미 농축산물 적자 71억 8천만 달러, 유럽연합 31억 6천만 달러, 중국 50억 달러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임(출처 : “트럼프 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우리 농업의 대응”, 이해영, “개방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농정개혁 토론회” 자료집 p. 24, 2017. 2. 23)

- 이 가운데 트럼프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자국우선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임. 취약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른바 “공정무역”을 내세우면서 한국·일본·중국 등에 대해서는 자국 내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환율조작국 지정 등 전방위적 수단을 동원하여 압박해 나가는 방식의 급진적 보호주의 형태로 이행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상 당국(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된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버리지 못한 채 동시다발적 FTA를 통한 시장 개방에만 집착하고 있음.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소수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이 수립·추진되는 구조여서,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농업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임(위의 자료집, p. 25)
- 이같은 FTA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2015년에는 전년 대비 8%,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6.9% 감소하였음.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수출입 총액이 1조 달러 미만에 머물게 되면서 수출 동력이 한계에 부딪혔으며, 정부의 FTA 확대 정책의 한계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위의 자료집, p. 18)

4)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전면 정비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인 중심의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농지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 농지소유 및 경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시행)를 통하여 부재지주·임차농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함
 - 불법 혹은 비농민 소유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강제처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민·형사상)토록 해야 함

- “농지법”의 하위 법령으로 별도의 “농지임대차보호법”을 제정·시행해야 함
 - “농지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대차 확인을 위한 제도, 임대차의 최소 기간, 임대인의 지위 승계, 서면계약원칙, 목시적 갱신 등의 조항을 반영해야 함
 - 농지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는 물론 해당 농지의 시·군 관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능토록 하고,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관내 한국농어촌공사(지사)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함으로써(주택임대차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차농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

제안 배경

- 1996년 농지법이 제정·시행돼 왔으나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효과적인 법적·제도적 관리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지 소유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을”의 입장에서 농지가격 및 임차료 급등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할 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현행 농지법 체계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며 농촌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농지이용체계의 핵심축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생

산 및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나아가 농촌다움(생태·환경·사회·문화 등)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농업인의,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을 위한' 농지제도(소유, 이용, 전용 등)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 농지법이 농업 생산에 매진하는 현장 농업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반하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실질적으로 용인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정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농지 정책의 난맥상이 심각한 실정임
- 2000년대 들어서도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건설, 4대강 정비사업 등의 여파로, 기존 농지에서 쫓겨난 농업인들은 대체 농지를 구매하거나(대토) 임차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터(농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음. 농지 가격과 임차료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상황을 감수하더라도 대체할만한 농지 자체가 모자랐기 때문임
- 더욱이 수도권 등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쌀 소득보전직불금(고정+변동)을 지주에게 모조리 내줘야 하는 현실을 호소한 현장 농업인의 발언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출처 : “쌀 생산조정제와 대체작물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16. 11. 18 김현권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청중발언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거주 농업인의 토론 내용 참조)

5)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농업계 직능 대표의 공천 의무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야 정당들이 농업인 등 소외 계층 직능대표를 당선권 내에 과반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토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보좌진·예산 및 특권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함으로써, 국회의원 구성에 있어 계층별·부문별 대표성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어촌 선거구 통폐합에도 비례대표 공천에 농업계 인사는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농어촌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통폐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들은 농업계 인사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거나 비례대표도 당선권과 거리가 먼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농업계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음(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시 당선권 내 농업계 인사 비례대표 배정 사례는 1명에 불과한 실정임)
 - 여야 정당들이 노동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당선권 내로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 1.9%, 256만 9천명을 차지하는 농가 인구는 물론, 939만 2천명(2015년 농업총조사)에 달하는 농촌 인구의 비중을 무시한 비례대표 공천의 불합리성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경력에 있어서는 “정당인, 국회의원, 변호사, 공무원의 정치인 유입비율이 민주화 이후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며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다, ▲”50대 남성, 서울대, 법조인, 혹은 관료“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편향성이 심각한 실정임(“노동자·농민의 정치개혁 방향과 제도개선 과제” 발제문, 이관후, p.17 참조)

6) 농어촌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재조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어촌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함
 - 향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선거구를 획정할 때에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선거구 면적도 고려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1개 선거구에 3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인구 편차를 예외로 두고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제안 배경

- **현행(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
 - 농어촌은 시군마다 각각의 지리적·경제적·행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취지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거하여 확정된 현행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며 지역 실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임
 - 현행 공직선거법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시도 관할구역 안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면적 등 다른 요건들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위의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향후에도 인구 대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촌 주민(유권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예 : 서울특별시의 경우 총 253개의 지역구 선거구 중 49개가 있으며, 자치구당 3개(갑·을·병)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도 3개(강남구·노원구·송파구)가 있는 반면, 강원도는 동서에 걸쳐 5개 시·군이 통합된 선거구가 2개(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가 되어 심각한 불균형·불합리성이 초래되고 있음)

7)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신설·운영

대선공약 요구사항

- 대통령 직속 “(가칭)농업발전위원회”를 구축·운영하여 5년 단위 농정을 협의
 - 농업발전위원회는 신정부 1년차에 ▲“농어업·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법제화·의무화해야 함
 - 나아가 ▲농정에 대한 총괄 기획기능을 수행하고 ▲핵심 국정 시책들이 농업·농촌·농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의 실행 여부를 ▲중앙정부 부처들이 분산·수행중인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은 농업인단체, 중앙정부(농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장관 전원), 전문가(학계 등) 등으로 구성해야 함
- 청와대 내 “경제수석”과 별도의 “농림수산식품수석”을 신설해야 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점검 및 조율 기능을 수행토록 함

제안 배경

- 2009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가 폐지된 후, 범정부 차원의 민관협력 농정 자문·조율 체제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임
 - 일례로 중앙부처간 조정기능이 국무총리실 산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각 부처별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통합·조정 기능이 미약한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현행 농식품부 내 설립·운영중인 “중앙농정심의위원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사후(서면) 승인하는 정도의 기능만 발휘하고 있을 뿐, 농업·농촌정책 기조의 검토·수립 및 추진 성과의 평가·환류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1993년 문민정부 당시 청와대 내 “농림해양수석실”(최양부 수석)을 설치·운영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을 포함한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8)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어업회의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여 현행 지자체 조례에 의거한 임의 조직(시범사업) 형태를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적 대의기구로 전환해야 함
 - 새롭게 제정될 농어업회의소법에는 ▲“중앙-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의 역할과 책무(중앙정부·지자체에 대한 농정자문기능, 농업계의 의견 수렴·조율·갈등 조정 등)를 명시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사업 영역(예 : 농업인교육, 각종 통계·조사, 중앙정부·지자체 정책사업 대행 등) ▲정회원 참여 범위(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축·수협, 관련 업체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해야 함

제안 배경

- 2016년 들어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법’의 제정을 위한 물적 기반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2016년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초(4개), 광역(1개)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기초(16개, 충남도가 자체 선정한 논산까지 포함), 광역(2개)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운영중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임
 -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농정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 실천하기 위하여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제안된 것임
 - 아울러 농어업인 및 일반 시민들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표, 성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되어야 함

농정 기조 2	지속가능한 가족농 중심 농업생산구조의 유지·발전 방안
------------	----------------------------------

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세부 내용(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함
 -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농협 등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부과하고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훈련·멘토링 등의 육성·정착 지원 조항 ▲영농승계 혹은 신규창업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 방안(세제 혜택,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야 함

제안 배경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1981년 이후 2016년까지 총 14만명이 넘는 후계농업경영인(구 농어민후계자)이 지정되었으나, 이들의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은 1회성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불과하여 체계적·종합적 지원·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 법 조항은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1980년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대)에 이어 ▲현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돼 있음
 - 그러나, 이들 법령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선언적 문구로만 그치고 있으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주요 정책 과제가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나아가 헌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법적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다, 농업·농촌정책 상 “후계농업경영인”의 불명확한 지

위 및 위상에 관련된 문제점 등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과제임

○ **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포함)이 자녀에게 경영승계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함**

- 한농연 회원 대상 인터뷰 및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면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부모로부터 영농사업의 일부를 할애받아 독립적 영농을 하거나, 부모의 영농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농업경영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품목(축종)별로 전문화·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자녀 세대의 농업경영 승계를 통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실질적인 농업 진입 경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이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부모 세대의 은퇴 혹은 사망 이후에 부모가 성장시켜 온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농업경영 승계), 1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농업경영 승계를 고려중인 농가에게는 경영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지를 비롯하여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완화(과세특례)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일원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현행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틀 안으로 편입하여 일원화해야 함
 - 신규 선정되는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0% 금리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지원 한도 4억원 이상 ▲농지·농업용시설·농가주택·농기계 등의 저가 임차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자체·농협 등의 지원 체계를 전면 정비해야 함
 - 신규 선정되는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귀촌 육성정책”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금리, 상환기간, 지원 한도, 각종 혜택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함
 - 귀농·귀촌 희망자 중 영농 기반이 없거나 취약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영농 의지가 명확한 자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하고 귀농(신규 창업취농)을 통한 영농 정착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야 함
 - 자산·소득 수준이 높거나, 도시 지역에서 취업 혹은 사업을 영위중인 귀농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육성·지원·관리 체계를 내실화해야 함
 - 검증된 전문인력인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관리를 위해 시·군별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해야 함(기존의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농업인력지원센터”에 흡수·통합)
 - 기 조직된 민간단체(농업인단체)의 조직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 육성·지원·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귀촌자를 선정할 경우, 구비 서류에 시군구·읍면동 단위 농민단체장 추천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해야 함

제안 배경

-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 정책으로, 기존 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음

- 1981년부터 실시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은 전문농 이상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영농 규모화, 농업 총생산, 농가소득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영농인력 증대에 기여했음에도 타 지원사업보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참고)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정책과 타 지원사업간 비교

지원사업	자금 규모	금리	상환기간
후계농업경영인(신규)	2억원	2%	3년 거치 / 7년 상환
쌀 전업농	9억원	2%	최장 30년 / 15년 상환
귀농·귀촌	3.5억원	2%	5년 거치 / 10년 상환

-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농어촌 주민 늘리기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시행해 온 ‘묻지마 식’ 귀농·귀촌정책이, 실제로는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과 충돌·갈등을 빚으면서 과잉·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농촌 주민들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부정적 결과만을 낳고 있음

* (예) 경상남도는 2015년 7월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통해, 귀농·귀촌 예산 45억원을 기존 농업인 지원 예산으로 전환하였음. 그 이유로 경상남도는, ▲귀농 지원 정책으로 이주하는 도 시민이 실제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생각하고 옮겨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다, ▲귀농인에 대한 과잉 지원으로 기존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등 전통적인 농촌 공동체를 훼손하는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과 정부의 여타 농업인력 육성정책간 연계성도 부족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신규, 추가지원),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전업농 육성정책, 농업마이스터 육성 정책 등, 정부의 현행 농업인력 육성 정책간의 관계(연계성)가 모호한 실정임
- 원칙적으로는, 최초 창업 단계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자신의 “생애주기(life-cycle)”를 따라 농업경영 규모를 확대 성장시키고 ▲자신의 품목(축종)은 물론 농산업 내 담당 분야(생산,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을 포함한 6차산업화)에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농산업(농축협, 농업법인, 기본법 협동조합 등)은 물론 ▲농업·농촌정책(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지도자(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원화·체계화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마땅함
- 이에 한농연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농업인력 육성제도의 일원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농식품부는 개별 정책 목표 달성(영농 규모화, 농촌 인구 증대 등)만을 염두에 둔 인력 정책 기초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임
- 개별화, 파편화된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농업인들의 품목(축종)별·영농 규모

별 이해관계 및 갈등 요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핵심 농정현안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음

○ 낮은 농업소득, 생산비 증가, 높은 금융비용 등의 요인들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유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14년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가 2%로 인하되었으나, 최초 영농 진입 단계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희망자의 입장에서 최대 2억원의 정책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갚기에는 버거운 실정임(아래 예1, 예2 참조)

* (예1) 신규 후계농업경영인(2%, 2억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원리금 226,492,909원(매년 30,641,844원 상환)

* (예2) 추가지원사업(1%, 2억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원리금 240,843,289원(매년 22,083,228원 상환)

- 2010년을 기준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규모를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약 4,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일체와 첫 판매시점까지의 운전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계산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출처 : “후계농업경영인 신규창업 소요비용 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2)

품목별 구분	필요경영규모	총 창업비용
쌀	8.06ha	11억 4,319만원
사과	1.64ha	3억 1,871만원
한우	65.3두	4억 4,906만원
딸기	0.66ha	5억 5,575만원
인삼	0.58ha	3억 2,649만원
복합영농(쌀+한우)	한우 32.7두, 쌀 4.03ha	7억 3,860만원

11)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존치·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 2023년 이후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존치시켜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소집 대상자들이, 대체 복무 이후에도 농촌 현장에 성공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게끔,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제안 배경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들은 농업·농촌의 유지·발전 및 국가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음
 -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중 의무영농 기간 이후에도 연간 약 85~90%의 인원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편입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약 200여명 이상의 정예인력이 농촌 내 투입됨으로써, 만성적인 핵심 농업경영주의 부족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음

(참고)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개년 평균
배정인원	262	276	244	264	206	223	246	246

- 2015년 상반기 병무청이 제기했다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던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이 원안대로 현실화되어 2023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폐지가 실제 이뤄진다면, 농업·농촌에 정예인력이 육성·정착할 수 있는 핵심 경로가 차단되어 농업경영주 및 농업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12)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실시

대선공약 요구사항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를 도입·지원해야 함
 - 지원 대상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지 5년 미만인 자
 - 지원 방식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후 5년차 종료 시점까지 1인당 매년 1,500만원을 매월 급여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매월 125만원 지급)
 - 예산 소요 : 매년 최대 1,350억원(산출 근거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 1,800명 × 1,500만원 × 5년)

제안 배경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시까지 최대 애로 사항은 생활 자금 및 영농(운전) 자금의 부족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농경연 “농업전망 2017 참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 보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과수·축산·특작의 경우 최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최초의 수확물을 거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4~5년(인삼의 경우 한 사이클 당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고 영농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현재 후계농에 대해서는 농외부문 취업 및 창업을 금지) 정부·지자체의 소득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총 300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매년 1,800여명 이상 선발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등이 제외되었음)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지원 관련 해외 사례

- 일본의 청년취농자금 지원금 제도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엔, 우리나라 돈 1,600만원을 지원)을 지급하고 있음
- 프랑스의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 :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영농정착지원 대상자에게 최소 4천유로(500만원, 평야지역, 겸업)~최대 35,900유로(4,487만원, 산악지역, 전업)을 지원하고 있음
- 유럽연합(EU)의 청년농업인 직불금 :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하여 시행중이며, 국가별로 배정된 직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13) 제도권 및 민간 차원의 농업인교육·훈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

대선공약 요구사항

○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해야 함

- 자영농고·농생명고, 한농대, 천안연암대 등 정규 교육기관은 물론, 한국농업연수원 등 민간 교육기관을 통한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함
- 특히 ▲농업경영 전반(회계, 노무, 마케팅 등)에 대한 기초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물론 ▲농산업 전후방산업 및 농업정책(국내 정책, 해외 농업통상협상 등)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함
- 나아가 ▲농축협, 농업법인, 기본법 협동조합 등의 운영 원리는 물론 ▲농업인단체의 역할 및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또한 충실히 교육시켜, 향후 이들이 농산업 및 농업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한국 농업의 핵심 지도자(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임

○ 5년차 미만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멘토링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최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으로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및 6차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자를 읍면별로 1인 이상 멘토로 선정(멘토로는 한농연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 등을 우선 선정)
- 이들 멘토들이 5년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및 예비 후계농업경영인(농대, 농고생, 4-H 등)을 영농 및 생활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게끔 제도화해야 함
- 멘토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고, 농업기술센터(시군청의 농정과)에서 멘토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함
- 특히 이들 멘토들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정시 영농 의지 및 미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선정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시 이를 첨부·제출토록 제도화해야 함

제안 배경

- 승계 방식으로 영농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정규 교육 과정(자영농고, 한농대 등)은 체계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신규 창업취농을 목표로 하는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훈련 및 지원 시스템은 취약한 실정임
 - 자영농고, 천안연암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들은 승계 방식으로 영농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사관학교 방식(기숙생활, 영농현장 실습·훈련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신규 창업 취농방식으로 진입하는 30~40대의 귀농·귀촌인들은 ▲영농기반이 없거나 취약하고 ▲전문적인 직업 훈련 과정을 거치지도 못한 채 진입하고 있어, 농촌 생활 및 영농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 때문에 이들은 ▲영농기술 및 경험 부족 ▲자본 부족 ▲가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 부족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망 편입에 애로점 등을 호소하고 있음. 이 때문에 공교육 영역 밖에 놓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출처 : “지속가능한 농업의 조건 : 고령농과 청년 신규취농”, 농업전망 2017, p.57)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간 상시적인 기술·생활 지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통(인맥 형성) 및 멘토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2014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임
 - ▲2016년 기준 멘토가 전국적으로 총 31개 품목의 54명에 불과한데다(멘토 자격 기준마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 현장지도교수로 한정) ▲사업예산은 2015년 7천3백만원에서 2016년 5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멘토 1인당 교육비도 시간당 5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교육 컨설팅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임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으로 기술·경영·재무 등의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 획득은 물론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서까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내 읍면·시군 내의 선배 후계농업경영인의 도움이 절실함
 - 상시적·안정적인 멘토링 관계를 활용하여 관내 농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맥과의 관계 형성 및 일상적인 소통·협력 관계를 구축·확대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 농산업 및 지역농업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현행 멘토링 교육 체제로는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음

농정기조 3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의 정비·확충 방안
-----------	---------------------------

14)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까지 확대해야 함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농식품부의 예산 편성 자율권 강화)
-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대폭 확대·추진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진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2016년 기준 14% 수준에서 차기 대통령 임기 만료시까지 약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EU와 스위스 수준인 80%까지 인상시켜야 함

제안 배경

- 전체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직불금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전체예산 및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액 변화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전체		농림수산물 식품분야			농림축(수)산 식품부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대비 비중	
'06	2,241,000	6.9	147,703	7.2	6.6	135,539	2.1	6.0
'09	2,845,000	10.6	168,745	6.0	5.9	146,363	4	5.1
'12	3,254,000	5.3	181,322	2.8	5.6	136,779	3.7	4.2
'15	3,754,000	5.5	193,065	3.1	5.1	140,431	3	3.7
'16	3,864,000	2.9	193,946	0.5	5.0	143,681	2.3	3.7
'17	4,005,000	3.7	196,221	1.2	4.9	144,887	0.8	3.6

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각연도자료(www.mafra.go.kr)취합·정리

- 위의 표를 보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06년 6.6%에서 2017년 4.9%로 감소하였음. 또한 '17년 전년 대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3.7%인 반면 농업예산 증가율은 0.8% 수준임.
 - 특히, 박근혜 정부의 '13년-'16년 농업예산 증가율은 평균 1.25%에 그쳐 참여정부 평균 3.46%, 이명박 정부 2.46%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정비·확충의 핵심 과제를 제대로 실천하고, 농업의 다원적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가 실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에 있어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여하는 바는 크지 못하며,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음.
- 농업직불제가 다양하게 시행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 액수는 농업소득의 18.2%, 농가소득의 5.4%에 불과하여 실제 농가소득 기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행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특정 품목 집중, 면적당 지원에 따른 농가 양극화 문제, 복잡한 제도와 시행체계, 통합성 제고 불가, 불명확한 상호준수 이행조건 및 직불제 공감대 형성 한계 등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소득보전 직불제의 조화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상호준수의무를 전제하면서 현행 직불제를 전면 확대·재편해야 함
- 미국, 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 가능한 농가소득의 하락, 농업경영의 불안정 문제 외에도 자국의 농정문제 해결 및 농정목표 달성(식량 공급, 국토 균형발전, 농업환경 및 자연보호, 문화경관보전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개편·강화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공익형 농업직불제를 확충하고 쌀 등 주요 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리스크를 완화하여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임
 -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공익형직불제에 있어서는 농가의 의무이행 준수를 전제하여 다원적 기능 제공자로서 농업생산자가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함

15)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

대선공약 요구사항

- 쌀소득보전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벼 재배 여부와 상관없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WTO 농업협정문 상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제도(Blue-Box)로 분류되어 변동직불금 지급 상한(현행 1조 4,900억원 AMS 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됨은 물론, 휴경 혹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벼(쌀) 과잉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제안 배경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벼)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축소하려는 농식품부의 정책 개편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농식품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6년 11월 이후 “중장기 직불제 개편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핵심 내용은, ▲현행 고정직불금은 논·밭을 합쳐서 농지보전용 고정직불금으로 통합하고 ▲변동직불금은 영세·고령농 위주로 지급하여 농가규모별 형평성을 맞춘 후(지급상한 14~16ha로 구상) ▲중장기적으로는 전업농 규모의 벼(쌀) 재배 농가부터 수입보장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변동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임
 -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쌀 생산·재고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초래되는 벼(쌀)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며 ▲벼 재배를 포기하고 타 작목(주로 밭작물)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밭작물 전반에까지 ‘풍선 효과’가 전가됨으로써, 국산 농산물 전반의 과잉 공급(출하)와 가격 폭락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쌀소득보전직불제 위주로 집행되는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밭농업 직불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함은 물론, 공익형 직불제 지급액을 늘려나가야 함

16) 발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 인상 및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방식) 지급

대선공약 요구사항

- 발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하여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도 지급해야 함
 -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자란(한-중 FTA 후속 대책 차원에서 2020년이 되어서야 ha 당 60만원 지급토록 결정) 발농업직불제 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해야 함
 - 발농업직불제 변동직불금의 경우, 핵심 발작물의 생산비와 연계시켜 5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 목표가격간의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하되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작물의 과잉 생산·출하를 억제하는 효과를 도모해야 함

제안 배경

- 발농업직불제의 경우, 고정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비해 모자란 수준(2017년 45만원, 2020년 60만원까지 인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벼(쌀)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강원도(중산간지역, 조건불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발농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발작물(엽채류, 근채류, 양념채소류, 과채류, 특작 등) 전반에 걸쳐 미국·유럽연합·중국 등과의 FTA로 인한 개방 확대(관세 하락·철폐, TRQ 물량 증대)와 함께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과잉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인해 농가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그럼에도 현행 정부의 직불금 정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만 집중돼 있는 반면, FTA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발작물에 대해서는 가격·수급안정 대책(최저가격보장제도, 계약재배 지원 정책 등) 및 소득·경영안정 대책(농작물재해보험, 수입보험 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발작물에 대해서도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발농가들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

17)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대선공약 요구사항

-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들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우량농지 보전, 농촌 자연환경 및 전통 문화의 보전 등)"의 유지·발전을 조건으로 사회 협약을 맺도록 하고, 이의 실천 대가로써 직불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분야 직불제를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함
- 농산물 수입개방, 주요 정책대상 품목에 대한 경영불안정 해소 등을 위해 현행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유지·개선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원적(공익형)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직불제를 대폭 확대·시행해야 함

제안 배경

- 농가소득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현행 직불제의 개선이 필요함
 -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여러 형태의 직불금 제도가 있음.
 -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다수의 영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며,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통해 책임지는 공익적 기능(공정적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직불제의 보완·강화가 필요함
- 최근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현행 품목 중심의 직불제를 농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변동직불제의 경우 수입보험과 연계하는 경영위험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고정·변동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설정하는 방식 등은 전업농과 고령·영세농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직불제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 특히 농식품부가, 중장기 직불제 개편 방안의 마련에 있어 예산 증액도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정책 수혜 대상자인 농업인(직불금 수령인)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초래될 수밖에 없는 갈등 심화와 같은 부작용 또한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임

○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 보전, 쌀 등 주요 정책대상 품목 농가의 농업경영 불안정 해소 등을 위해 현행 소득보전형 직불제는 유지·개선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다원적(공익형)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직불제를 대폭 확대·시행해야 함

- 현행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현행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현실화 하고, 보전비율 또한 현행 95%수준에서 100%로 상향해야 함. 또한 지급 단가 산정시 현재 적용중인 수입기여도를 삭제해야 함
-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용·사료용 곡물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작물(콩, 옥수수 등)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공적 기능을 대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예 : 겨울철 마을앞 도로 제설, 어르신 돌보기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주가 영농 활동을 통해 농지의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가칭)생태보전직불제”를 도입·실시해야 함
- 농촌 마을 생활환경 유지·개선, 농촌 노인 및 다문화가정·조손가정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 무기질·유기질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소, 생태 축산(동물복지 증진, 축산분뇨 배출량 절감 등을 통한 환경부하 감소) 실천 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18) 농업재해보험 및 수입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작물 재해보험 내 날씨 특약 신설 및 수입보장을 확대 해야 함
 - 기온이나 강수량 등 측정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 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날씨 특약 신규 개설이 필요함
 - 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및 가격하락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보장 특약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함

제안 배경

-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 도입·운영되고 있음
 - 가축재해보험은 '97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은 '0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보험료 50%와 운영비(농작물 100%, 가축 50%)를 지원하고 있음. 가입률은 90% 수준임
 -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농업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풍수해보험은 정부 재정지원 55~86%(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 86%)로 도입·운영되고 있음
-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까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일선 농업인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NH손해보험이 피해인정율을 70%에서 50%로 삭감토록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을 변경하여 농민들의 실제 보험금 수령액이 줄어들어 경북 안동시 사과 재배농민들이 크게 반발한 사례(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2012년 3월 12일 보도). 2010년 피해인정율을 80%까지 보장했으나 2011년에는 70%, 2012년에는 50%로

줄어들었으며, 특히 이 피해인정율에는 자기피해부담율 20%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보상받는 비율은 30%로 떨어진다는 농민들이 반발이 제기되었음

-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지역(시·군) 내 농가들 중 실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기 연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성(보험료 할증제도)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농작물의 실제 재배 동향과 동떨어진 상품 설계로, 농가가 실제로 피해를 입는 봄·가을의 동·상해 등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한 사례(보장기간과 보장 재해의 종류·범위의 확대 요구)가 있음
- 전문 손해평가사 인력이 부족하여, 재해 피해의 신속한 조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 등 처리가 지연되어 농가의 2~3차 피해로 이어지는데다, 지역 농·축협 담당 직원의 업무 부하가 급증하는 사례가 있음
- 나아가 폭염에 의한 과실·채소의 일소피해, 병해충 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피해 유형에 대한 보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농정기조 4	민주적·책임 경영,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 개혁 방안
-----------	--------------------------------------

19)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농협개혁특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협개혁위원회”에서, ▲현행 “농협경제지주회사”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 ▲농협중앙회(산하 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와 일선 농·축협의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확정시켜야 함

제안 배경

- 2017년 3월 농협경제지주로 경제사업이 완전 이관된 후, 일선 조합 및 조합원 중심의 경제사업 체제로 이행해야 함
 - 기존 농협중앙회 보유 경제사업(농경·축경) 자산이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완료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 1월초 기준 4조 9천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되었음
 -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이전과 달리 농협경제지주는 자기자본을 토대로 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에 공세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케 되었으나, 오히려 일선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과 배치(경합)하는 사업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리인 문제”를 완화시키고 일선 조합 및 조합원 중심의 사업 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농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 경제사업연합회 설립은 2011년 농협법 개정 당시 농업계의 합의사항이었음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 “농협중앙회⇒경제사업연합회” 방식으로 전환하는 “인적 분할” 방식이 검토되었으나,

당시 법령 및 제도상 한계 및 일선 조합·조합원들의 이해와 동의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산하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물적 전환” 방식으로 진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임

- 이에 2010년 말 경제·금융지주 방식으로의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농업계(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은 ▲2011년 농협법 개정시에는 경제·금융지주 회사로 “물적 분할”을 하는 1단계 작업을 시행한 뒤 ▲경제사업 완전 이관 후에는 농협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시키는 “인적 분할” 방식의 2단계 작업을 시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음

20) 농·축협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금융연합회” 신설

대선공약 요구사항

- 일선 농·축협의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강화를 위하여 “상호금융연합회”를 신설·운영해야 함
 - 현행 농협중앙회 내 “상호금융총본부(상호금융대표이사 소관)”를 농협중앙회와 별개 조직으로 독립된 전국 단위 연합회 조직인 “상호금융연합회”로 신설·재편해야 함
 - 중앙 단위 “상호금융연합회”는 ▲일선 농·축협의 신용사업(상호금융)을 총괄 지원·관리·감독하는 “상호금융중앙은행”의 역할은 물론 ▲일선 농·축협의 여유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 공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함
 - 아울러 ▲일선 농·축협의 취약한 소매금융 상품(조합원·준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예·적금, 대출 등) 개발·판촉 능력을 보완·강화시킬 수 있게끔 상품개발 및 대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함

제안 배경

-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이후, NH농협금융지주 및 시중 은행은 물론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과의 무한 경쟁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일선 농·축협의 신용사업(상호금융)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일이 시급함
 - 예대비율·예대마진 저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일선 농·축협 신용사업(상호금융)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자칫 농·축협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도 높은 상황임
 - 아울러 NH농협금융지주 및 시중 은행, 제2금융권(수협·신협·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과의 무한 경쟁체제로 일선 농·축협이 내몰리면서 ▲소비자 지향형 상품(예·적금, 대출 등) 개발·운용 ▲여유 자산의 공격적 투자를 통한 수익성 증대 ▲일선 농·축협 부실 발생·확대시 이를 책임질(채권자에 대한 최종 지급 책

임자로서의) 농·축협 상호금융 부문의 중앙은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농협중앙회 내 “상호금융총본부” 체제로는 위의 3가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어려우며, 신경분리(사업구조 개편) 이후 NH농협금융지주와의 관계 정립(협력자적 관계 or 경쟁자적 관계)마저도 모호한 상태여서 자칫 일선 농·축협 신용사업(상호금융)의 독자적 생존 기반마저 취약해질 우려가 높은 상태임

21) 농·축협 조합원 정예화를 포함한 민주적·책임경영 체제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협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영농 조합원 중심으로 일선 농·축협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 함
 - “농협법”은 물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 기반 및 생산액(매출액) 기준을 준수한 자에 한하여 농민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야 함
 - 중앙회(자회사) 및 일선 농·축협 직원 출신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현직 직원 및 퇴직 후 5년차 미만 직원 출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농협법”에 명시해야 함(선거권 및 배당권은 부여)
 - 일선 농·축협에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제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농·축협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엄격히 제재해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배구조를 일선 농민조합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사, 감사, 대의원을 해당 조공법인에 참여하는 일선 농·축협의 이사, 감사, 대의원 대표 중 선출토록 함으로써, 조공법인이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함(농식품부 장관 고시사항인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를 개정)

제안 배경

-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일선 농·축협 차원의 체계적인 조합원 관리 및 정예화 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 지역 기반의 종합농협 체제인 한국 농협의 특성상, 핵심 영농세력인 전업농 조합원(한농연 회원이 주축임) 이외에도 영세·노령농, 취미농, 비영농 조합원, 직원 출신(현직, 퇴직), 신용사업 분야(예·적금, 대출 등) 준조합원 등 조합원 구성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특히 열악한 농촌경제의 여건상, 부족한 조합 출자금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 출신(현직, 퇴직) 조합원의 기여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여건임

- 그럼에도 생산자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선 농·축협이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보된 조합원 정예화와 함께, 직원 출신 혹은 비영농 노령 조합원 위주의 지배·운영구조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합원 정예화를 위한 강력한 이행 조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배·운영구조가 참여 농·축협의 조합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책임 경영 관행이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임**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는 물론, 이사, 감사까지 모두 조공법인에 참여하는 농·축협의 조합장들만으로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농식품부 장관 고시사항)로는, 조합 경제사업(판매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한)의 확장·발전을 위한 일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임
- 오히려 일부 쌀·원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비리를 근절시키지 못함으로써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사례도 다수 나타난 바 있음

22) 농·축협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조합원 교육 내실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식품부 산하에 “농·축협 교육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해야 함
 - 현행 농협중앙회 내 소이사회로 구성·운영중인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농식품부 산하의 신설 독립 위원회인 “농·축협 교육 및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함
 - “농·축협 교육 및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민조합원 및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대의원 대상 경영능력배양교육을 위한 공통 프로그램(교재, 강사진 포함)의 개발·운영은 물론 ▲농·축협 운영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최초 현황 파악 및 합리적 분쟁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일선 조합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 일선 농·축협의 연말결산서, 정기·수시공시, “농축협경영계수요람”, “우리 조합 현재위치 진단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서”, “감사요령” 등의 각종 자료·서식을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별도 코너를 만들어 상시 공개해야 함

- 임원, 대의원, (예비)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함
 - 농식품부가 정한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만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출마가 가능하도록 농협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야 함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서도 농·축협의 정체성·운영 원리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축협의 사업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미래의 핵심 지도자(임원, 대의원 등)로 성장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축협 관련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함은 물론 이와 연관된 다양한 분쟁(요인)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내 별도의 위원회 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높음

- 현행 “교육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이사회 내 소이사회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나, 일선 농·축협 임원·대의원과 직원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환류하여 개선할 수 있는 체계로 작동하지는 못하는 상황임
- 농협중앙회 차원의 자체 임원·대의원 대상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신이 큰 농민조합원들은 농업인단체와 민간 연구소 등이 주관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은 ▲협동조합의 원칙·정체성·운영 원리 및 농업경영체(법인)의 기초적인 운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축협의 비리 적발 및 감사 실무에만 치우친 교육을 하고 있어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협중앙회·농업인단체·민간 연구소가 공동으로 표준 교육 프로그램(교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 강사진을 육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일선 농·축협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장·간부직원 vs. 이사·감사·대의원(조합원)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축협 내부의 분쟁과 갈등 양상은 2019년 제2회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선 농·축협의 자율 경영의 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화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높음(사례 : 기획재정부 내 복권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내 무역위원회 등)

○ **일선 농·축협의 민주적·투명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자료 공개가 절실함**

- 조합 사업계획의 올바른 수립, 결산 후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책임지는 민주적·투명 경영 체제의 확립을 통해, 일선 농·축협의 건강한 운동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그러나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 평가, 자체 감사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자료들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이사·감사·대의원은 물론 조합원 입장에서 해당 정보에 접근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나아가 농촌경제를 책임지는 농·축협 상호금융은 물론 경제사업의 건전하고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합 내 각종 경영지표 및 관련 정보·자료의 공개는 필수적임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이사, 감사), 대의원 등(출마 희망자 포함)의 농·축협 운영을 위한 기초 소양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높음**

-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평조합원 모두가 협동조합의 원칙·정체성·운영 원리

는 물론,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등)의 민주적·투명 경영을 위한 기초 소양(농협법, 정관 및 제규정, 복식회계, 인사·노무 관리 등)이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농·축협 임원·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농협법 및 민법·상법 등과 배치되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큰 실정임

23)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농촌 분야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들을 “영농협동조합”으로 규정)에 대해서도,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
 - 영농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를 허가(“농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영농협동조합의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허가(직불금, 면세유 배정 등이 가능하도록)
- 농업생산조직의 체계 정비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함
 - 작목반, 공선출하회, 농업법인, 농업·농촌 분야 기본법 협동조합 등이 농·축협이 생산·가공·유통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농·축협 정조함원 지위 부여, 이사·대의원 참여 보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 보장 등)
- 농업·농촌 내 사회적 경제 및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함
 - 농협중앙회(시도지역본부, 시·군지부)와 일선 농·축협이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사회적기업 및 기본법 협동조합을 설립·발전시킬 수 있게끔 지원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경영·세무·회계·노무 컨설팅, 정책자금 지원, 농협 시설 공동 이용 등)
 - 농·축협은 물론 사회적 기업, 기본법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시·도 및 시·군 차원의 다양한 연합 조직(클러스터)이 자유롭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업인(생산자), 도시 소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농업·농촌 분야에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원 정책은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국회 농식품위에 제출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은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만든 농업·농촌의 협동조합 가운데 농민이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면서 농어민의 지분이 절반 이상인 협동조합을 “영농협동조합”, “영어협동조합”으로 정의하여 이들을 농업법인으로 인정하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영어조합법인은 영농협동조합이나 영어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지분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영농협동조합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농민이 중심이 되고 농업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로 인정되어 농식품부 정책사업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들 조합들은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못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못해 직불금 수령·면세유 배정 등 정책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자본이 90% 미만으로만 지분을 가지면 얼마든지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기본법 협동조합은 대다수가 농민으로 구성되어도 정책대상이 되기 어렵고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농업법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심지어 기본법 협동조합을 만든 후 농지의 공동소유를 위해 별도로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경우도 나타났음
- 생산자인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만 가능한 사업 방식(예 : 제철 꾸러미 농산물 직거래, 귀농·귀촌 지원 등)을 가능케 하려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일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양하게 결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협동조합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변경해야 함

○ **일선 농·축협과 농업·농촌 내 협동조직간의 건전한 경쟁과 건설적 협력이 절실함**

- 작목반, 공선출하회,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분야의 일반·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일선 농·축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협력적·경쟁적 관계로 연결돼 있으며(농업법인은 농·축협의 정조합원 혹은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상호간 견제와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 있음
- 일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농촌 내 사회적경제, 6차산업 활성화, 도농교류 등의 활동에 있어서, 농·축협이 이들 협동조직의 중심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길 꿈 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지원 및 법령·제도의 개선이 절실함

24) “돈은 묶고 입은 푸는” 방식으로 조합장·임원 선거 제도 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2019년 제2기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이전에 “농협법” 및 “공공단체에 대한 선거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여,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정책 선거 풍토를 조성할 수 있게끔 해야 함
- 조합장 선거 관련 핵심 개선 요구사항
 - 농·축협별로 합동연설회 혹은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의무 실시
 -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원 제도를 도입
 - 방송(TV, 라디오 등)을 통한 조합장 후보 경력 방송 실시(농·축협별 1회 이상)
 - 후보자에게 제공되는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의 핸드폰 번호(전화 및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제안 배경

-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는 고질적인 금품선거·부정선거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었지만, 후보자도 조합원도 답답했던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한계점을 보여주었음
 - 농협법 및 위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된 상황에서, 2주 정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공약을 알리기도, 조합원들도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을 파악하기에도 힘겨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특히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가 폐지됨으로써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음
 - 일부 후보자들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는데, 선관위가 지지자 혹은 지인들이 이를 리트윗하거나 인용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지나친 규제라는 불만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깜깜이 선거”가 오히려 금권·타락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선거 과정 내내 돈 선거, 혼탁선거 양상은 여전했고, 정책선거보다는

조직선거에 의해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음

○ **초선 도전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합장 선거 제도의 문제점**

- 조합 업무를 잘 아는 현직 조합장 및 직원 출신(상임이사, 전무, 상무 등)에게 선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졌음
- 일선 현장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 및 선거운동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를 농협 및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초선 도전자들은 제로 베이스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음
- 특히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지 않아, 후보자들은 지인들을 통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농협과 선관위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직 조합장 및 직원 출신 후보자들은 초선 출마자보다 훨씬 수월하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었을 것임

농정기조 5	농업인의 삶의 질 증진 및 농촌개발 정책 발전 방안
-----------	---------------------------------

25)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 보험” 제도 도입

대선공약 요구사항

-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상품에 임의가입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을 대체하여, 중앙정부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인(산재보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도입·실시해야 함
 -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에 모든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들이 의무가입토록 함
 - 위험성이 높은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험 제도를 구축·운영해야 함
 - 사망 또는 고도장해시 지급하는 보험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함

제안 배경

- 기존의 “농업인안전공제”를 대체하여 NH농협생명보험에서 “농업인안전보험”을 판매·시행중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농업경영주이자 자영업자인 농업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근로자의 성격이 인정되어야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농·축협 직원 혹은 농업노동자 중 극히 일부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개인 사업자 및 일부 농업법인은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임.

26)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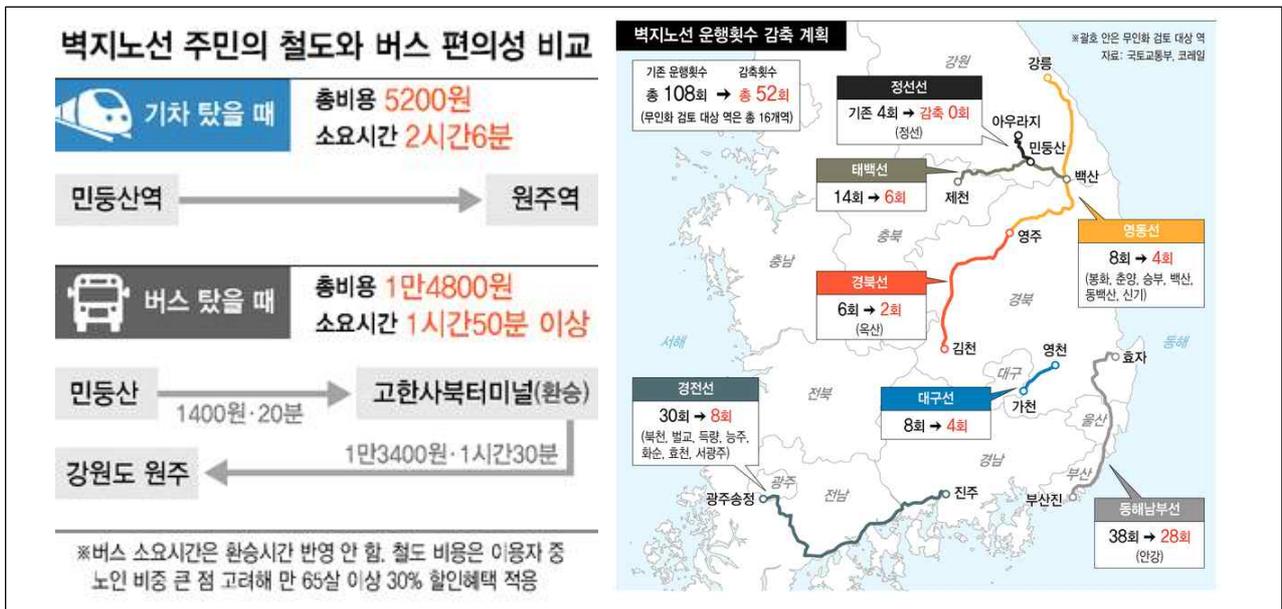
- 일반철도·시외버스 등 벽지노선 적자액을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광역시, 기초)가 전액 보전함으로써, 농어촌 노인·부녀자·청소년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함
 -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일반철도 적자 노선(태백선, 영동선, 정선선, 경전선, 대구선, 동해선 등)의 무궁화호·ITX-새마을호 운행 회수를 최소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아울러 시·군 소재지에서 서울 및 특·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으로 이동하는 시외버스 노선 및 운행 회수를 최소한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운전면허가 없는 65세 이상 농어촌 노인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장거리(40km 이상) 이동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와 지자체(광역시, 기초)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할인 쿠폰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설·추석 명절시 역귀성, 가족 애경사, 질병·부상 등의 치료를 위한 이동시 중앙정부·지자체가 할인 쿠폰을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 이를 통해 지하철·광역철도· 시내버스 등을 상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및 특·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과의 역차별을 시정해야 함

제안 배경

- 운전면허가 없거나 건강상 이유로 운전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농어촌 노인·부녀자·청소년 등의 장거리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음
 -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100원 택시” 등의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시·군 내부(읍·면 소재지↔농어촌 마을간)의 이동은 원활해졌으나, 서울을 포함한 특·광역시와 도청 소재지 등으로의 장거리 이동은 오히려 불편해지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합리화를 위해 농어촌 간이역을 축소·폐지하는 추세인데다, 신설 혹은 개량돼 직선화된 철도·도로망은 농어촌 마을을 비껴가면서 특·광역시와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어, 농어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통일호, 통근열차 등 농어촌 주민들이 저가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지속적으로 폐지·축소된데다 2020년 이후 무궁화호까지 축소·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음
- 교육·의료·개인업무 등의 목적으로 서울 및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로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교통약자들은, 무료(65세 이상 노인)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상시 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 주민들과 비교하여 교통비용 측면은 물론 이동 수단의 공급량 측면에 있어서도 2중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임
- 현재도 한국철도공사와 운송업체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에 필요한 적정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를 운송업체들에게 강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실액 전액 보전이 시급한 상황임



※ 출처 : “철도 벽지노선 ‘반토막’...주민들 “병원은 어찌 가나”, 한겨레 2017. 2. 2)

27) 고령자를 포함한 농어촌 취약 계층 지원 제도를 확충·정비

대선평약 요구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함
 - 농업생산 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소득환산율을 낮추거나 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함
- 농어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재개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의 리모델링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함
- 여성농업인 행복·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을 편성·지원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함
 - 중앙정부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광역, 기초)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행복·복지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어촌 주민에게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문제점
 - 농어촌 주민의 경우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능력 판정 등에서 도시 주민과 비교하여 불리한 상황임. 특히 휴·폐경농지, 빈 축사 등에 대해서까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농업인의 실제 소득 계산 방식에 있어 '농축산물 표준소득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상위 기술 수준의 선도농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영세·고령농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표준소득액의 일정 비율만큼 감액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중단의 문제점

- 2014년부터 시작된 농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시범사업은 농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마을회관 등의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150개소가 넘는 공동이용시설이 선정·운영돼 왔으나, 2016년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전액삭감 됐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이관하였음
- 농촌 고령자들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표 참조)

구 분	지정현황	만족도
공동생활홈	70개소	81.2%
공동급식시설	54개소	77.9%
작은목욕탕	28개소	77.4%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임

○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 현황(2016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행복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아래 표 참조)

	충북	경기	강원
사업 명칭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대상	70세 미만 여성농업인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연간 지원액	15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20만원 (자부담 4만원 포함)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 분야	의료, 문화 등	의료, 문화 등	문화, 여행 등

- 문제는 중앙정부의 통일된 지침(의료, 문화, 여행 등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통일)이나 예산 지원 없이 일부 도에서만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타 시·도의 여성농업인들은 상대적 역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 때문에 동 사업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편성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8) 학습권 보장,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농어촌 교육 개선 방안

대선공약 요구사항

- 소규모 농어촌학교 통폐합 중단 및 “(가칭)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
 - “농어촌 학교 교육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작은학교” 신설 등 소규모 학교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어촌 학교가 단순한 교육공간을 벗어나 지역 주민 전 세대들이 소통하고 문화적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 대학 입시 관련 “농어촌특별전형” 적용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해야 함
 - 대입 수험생의 학부모 중 1인 이상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거나, 농·수·축협 혹은 산림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전형”을 적용해야 함

제안 배경

-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을 통해 198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32년간 5,900여개소를 통폐합하였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배정하고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부과를 통해 통폐합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46개교가 통폐합되었고,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아래 표 참조)

구분	통폐합된 학교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193	38	15	246
서울	0	0	0	0
부산	4	2	0	6

대구	1	2	0	3
인천	0	0	0	0
광주	0	0	0	0
대전	0	2	0	2
울산	2	0	1	3
세종	0	0	0	0
경기	6	0	0	6
강원	26	2	1	29
충북	9	6	0	15
충남	15	3	0	18
전북	7	0	0	7
전남	52	7	9	68
경북	47	10	4	61
경남	23	4	0	27
제주	1	0	0	1

- 농어촌 학교 통폐합은 도농격차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와 정부 역점시책인 귀농·귀촌 확대와도 배치되는 것임.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소요시간과 교통비, 방과 후 활동의 어려움, 통학 생활 부적응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도 저해되는 것임

29) 주민 접근성 강화 및 예방적 의료 강화를 위한 농어촌 의료체계 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열악한 농어촌 의료 환경을 감안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 기준을 개선해야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인구 대비 의사수나 급성 질환자 발생 빈도, 일정 인구 수준 미만인 지역 등의 합리적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어촌 병원이 안정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
-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농어촌 취약 지역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 공중보건의(양방, 한방)을 최우선 배치해야 함
 - 2~3개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를 묶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사(전문성을 갖춘 퇴직자 위주)를 배치·순회 운영해야 함
 - 농어촌 오지 마을에 대한 순회진료와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1개 도 당 1대 이상의 순회의료 버스 및 담당의사·간호사를 배치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야 함
 - 농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내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부과 단일 방식으로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제안 배경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취약지역” 기준 변경으로 인해, 농어촌 응급의료 체계의 악화가 우려됨
 - KBS의 보도(2017. 2. 21)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인구 15만명 미만 지역을 응급의료 취약지로 정해 공중보건의와 보조금을 지원해 왔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내 도착 가능 여부로 기준을 바꿀 방침임
 - 보건복지부의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응급실을 갖춘 병원 숫자가 적은 농어촌

시·군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며, 인구 대비 의사 수나 급성 질환자 발생 빈도를 감안하는 등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어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의 진료를 전담하는 자체 의료법인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법인의 형태는 국·공립대처럼 공공성이 있는 학교법인과 연계하는 기부채납 방식, 일반 사립의대에 경영을 맡기는 위탁경영 방식, 농협이 직접 의료법인을 세우는 직영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함(농민신문 2017. 3. 7 보도 참조)
- 농어업·농어촌 부문에 별도의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 2016년 기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전국 6개 대학병원(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운영중에 있으며 ▲시·군 소재지 등의 1·2차 의료기관(특히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업인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마을별 순회 진료와 건강검진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전문 인력, 장비 등)을 점진적으로 신설·확충해 나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소득비례 부과방식에서의 변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중인데, 농지·농업용차량·농기계·시설·농가주택 등 농업 생산 및 농촌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필수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30) 농업인·농촌 주민의 생활용 에너지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읍·면·동 지역 주민이 가정용(난방,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및 등유(난방유 포함)에 대해서는 면세로 공급해야 함
 - 도시가스 배관 연결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마을별로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운영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수준만큼의 편의를 제공토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함
- 농어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주택 개량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함

제안 배경

- 도시가스(LNG) 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농어촌 읍·면·동 주민들은, 도시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크고 사용하기 불편한 LPG 혹은 등유(난방유)에 의존해야 함
 - 2016년 기준 서울을 포함한 8대 특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0% 내외로 매우 높지만(서울 98.0%, 광주 97.6%, 대구 94.8%, 대전 94.0% 등), 농촌 지역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70% 미만(전북 66.0%, 경남 64.3%, 충북 62.9%, 충남 61.3%, 경북 60.3%, 전남 45.4%, 강원 43.6%, 제주 8.8%)으로 나타났음
 - 2016년 기준 86.9%의 보급률을 보인 경기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관내 31개 시·군 중 서울·인천 주변의 위성도시들의 경우 대체로 80% 이상인 반면, 전형적인 농촌 지자체의 경우 안성시 60.50%, 여주시 47.70%, 포천시 35.18%, 연천군 34.50%, 가평군 23.70%, 양평군 17.60%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가스신문 2016. 7. 12 보도 참조)
 -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농촌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사업을 추진중인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LPG 가스통을 배달받거나 등유를 사용할 때보다 평균 34%의 연료비가 줄어들게 되고 ▲도시가스와 같은 계량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가 절실함(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의 LPG 배관망시범사업의 사례. 대전경제뉴스 2013. 12. 11 보도 참조)

31) 농업인·농촌 주민의 참여와 책임 하의 농촌개발·농촌자산 관리 체계 확립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여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농촌개발 정책 및 농촌자산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함
 - 농어촌체험마을(도농 교류활동), 농어촌 내 공공시설(국공유재산 등)의 활용·관리, 농촌 경관·생태 환경의 보전·관리,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구축·확대(6차 산업화 포함) 등에 있어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구축·이행해 나가게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혁신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촌개발 정책 및 농촌자산 관리 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아래의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농정 심포지엄, 2016. 12. 13. 윤원근 협성대학교 교수 발표 자료 인용·참조한 것임)
 - OECD의 농촌정책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존의 “새농촌 패러다임”(2006)에서는 농촌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과 농촌자산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다가 “농촌 정책 3.0”(2016)에서는 경제·사회·환경의 통합 접근으로 농촌의 웰빙 추구로 변화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사업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개발을 추진중임. 이는 생명공간으로서 농촌(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에 많은 재정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설들이 산재해 있으며, 농촌지역 유희자산 관리는 매우 부실한 상태임. 나아가 점적인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농촌경관, 하천, 건축물 등 광역적 공간 단위의 통합적 자산관리 방식이 필요함
 - 아울러 기존의 리, 읍·면의 행정단위에서 벗어나 ▲하천, 숲, 들녘 등 자원중심의 자원권 ▲관광, 음식, 교육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테마권 ▲공동체 조직의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대상 공간으로 확대해야 함

- 나아가 농촌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에서 확대하여 ▲지역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지역 조직 ▲농촌지역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NPO(농업인단체 등) ▲귀농·귀촌인(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직업군)의 육성도 요구됨

농정기조
6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32) “농안법” 전면 개정 및 “(가칭)도매시장법” 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 농축수산물의 산지 유통, 공영·법정도매시장 등 도매유통뿐만 아니라 소매유통(대형유통업체 등) 단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비해야 함
- “(가칭)도매시장법”을 제정해야 함
 -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참고하고, 현행 농안법 체계에서 공영·법정도매시장에 적용되는 부분을 가져와서 농안법의 하위 법령으로써 “(가칭)도매시장법”을 제정·운영해야 함
 - “도매시장법”에는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되는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권 및 관리·감독권을 현행 지자체(광역시, 기초) 단체장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환수함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내 “(가칭)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시행토록 하고 ▲5~10년 단위의 “공영·법정도매시장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함

제안 배경

- 현행 농안법은 농축수산물의 산지 및 도매유통(공영·법정도매시장에 국한)을 포함한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농축수산물의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유통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 법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경동시장·영등포시장 등 유사도매시장 내 위탁상을 통한 임의거래,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소매업체에 대한 직접 납품(직거래)시 출하자(농어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축·수협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임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농축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통한 생산자(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라는 농안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일뿐더러, 공영·법정도매시장 내 유통 질서를 규율하고 중장기적인 도매시장의 시설 현대

- 화 및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공영·민영도매시장의 유통 질서를 규율하는 “도매시장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행 농안법 내의 공영·법정도매시장 관련 조항을 별도로 독립시키고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농산물 중 상당량(10조원 이상)이 거래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미미할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제대로 마련·추진되지 못하는 구조가 고쳐지지 않아 이의 시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33) 농축산물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제도 정비

대선공약 요구사항

- 지자체(광역, 기초)별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축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적극 도모해야 함
 - 농·축협과 농업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 및 계통출하(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생산한 농축산물(수급·가격 변동에 민감한 관내 핵심 농축산물 중에서 선정)의 최저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체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함
- 일선 농·축협의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의 적립·운용을 내실화해야 함
 - 농축산물 판매사업 규모가 중앙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농·축협(쌀·원에 조공법인 포함)의 경우,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운용토록 농협법 및 조합 정관례 등에 명시해야 함
 -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유통손실보전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이 해당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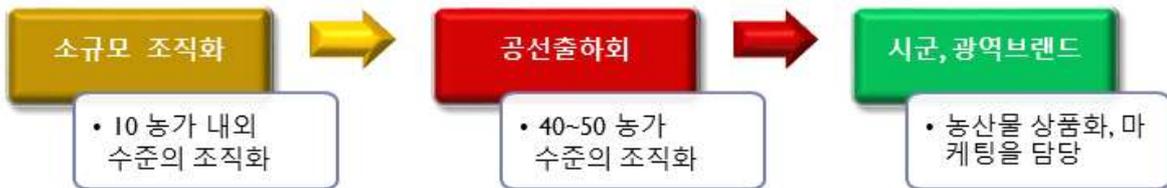
- 사례 :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핵심 내용(한국농어민신문, 2016. 7. 1. 보도 참조)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를 농가에게 보전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농산물 기준가격은 생산 활동에 소요되는 생산비(경영비와 노임 등)와 판매를 위한 유통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함. 시장가격(판매가)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상품 평균가격으로 결정함

- 전라북도는 연간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 2016년 하반기에 농산물 가격 변동에 민감한 2개 품목 정도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 지원할 방침이며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미곡, 잡곡, 과수, 축산은 제외키로 했음
- 지원 대상은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해야 함
-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은 농진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유통비 등 정부 공인통계를 기준으로 향후 구성되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키로 했음
- 전라북도는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분석,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오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임

34) 생산자 중심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추진

대선공약 요구사항

- 일선 농·축협 공선출하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야 함
 - 공선출하회의 조직수의 외형적·양적 증가보다는 공동계산 실적, 판매액 증가, 공선출하실적 점유율(회원조합, 부류별) 향상 등의 질적 개선에 힘써야 함
- 품목·지역별, 연령대별·영농규모별·기술수준별로 다양화된 농가들이 중층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유연성 있는 규모화·조직화를 추진해야 함(아래 그림 참조)



제안 배경

- 일선 농·축협 공선출하회의 구성 현황 및 문제점
 - 공선출하회란 농협과 농가간 출하계약에 의해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천하는 농가조직을 의미함. 공선출하회는 품질과 출하량 등에 있어서 계약에 의해 일정 자격조건을 부과하며 농협(APC)을 중심으로 결성된다는 측면에서, 회원자격에 제한이 없고 마을 단위로 구성되던 기존의 작목반과는 차별성을 지님 (출처 : 농협연감 2016. p.157)
 - 2009년부터 설립·육성된 공선출하회는 2015년까지 총 671개 조합 내에 2,009개 조직이 결성돼, 회원 수는 67,972명, 공동계산실적은 1조 5,434억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부의 농협경제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공선출하회의 조직수의 외형적·양적 증가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공동계산 실적 ▲판매액 증가 ▲공선출하실적 점유율(회원조합, 부류별)의 향상(순증 기준 평가 결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양한 단계를 이루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산지유통조직의 조직화·규모화를 지향해야 함(“산지조직화·규모화와 연계한 공영도매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11. 12,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연구용역 보고서, p.53 인용)
 - 본 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본 연합회 회원 포함 산지 출하자 대상), 농가의 조직화·규모화 형태는 다양한 단계를 이루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기존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위의 “대선공약 요구사항”의 그림 참조)
 - 즉, ▲ 개별 출하자들이 비슷한 영농규모와 기술수준을 가진 마을단위 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조직화로부터 출발하여 ▲ 읍면단위 지역농협 규모의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 규모의 조직화를 달성한 후 ▲ 시군 단위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농협연합사업단 등)이 담당하는 상품화·브랜드화 과정을 거쳐 가락시장 등 대규모 소비지 도소매 유통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35)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함
 -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경매장·배송장 시설 확충 ▲중도매인 점포 신설·확대 ▲저온저장시설 등 유통 인프라 개선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야 함

제안 배경

- 가락시장을 포함하여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국고지원 비율(보조율 30%)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대부분의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저온창고 부족, 매장 저온화 시스템 미비, 중도매인 점포 미비(일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경매장을 중도매인 점포로 활용)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음
 - 이같은 인프라 미비·부족으로 인해 농산물의 상온 유통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혹서·혹한기에는 상품성 저하가 심각할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식자재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상품화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노후시장 현대화의 경우,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현행 국고보조 비율(30%)로는 지자체의 자부담이 매우 크므로 시설 현대화와 확장·개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36) 품목별 전국 단위 마케팅보드 구축을 위한 의무자조금 활성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품목별 전국 단위의 마케팅보드의 구축·운영을 중장기 목표로 하는 의무자조금 제도를 도입·정착시켜야 함
 - 뉴질랜드(키위), 네덜란드, 캐나다(버섯)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법령 및 중앙정부의 제도를 통하여 품목별 유통위원회(의무자조금위원회)에 생산·수급조절·수출 판매권 등 강력한 권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유통위원회 산하 통합마케팅조직이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담당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식품부(유통정책과)가 2017년까지 기존 임의자조금(원예 분야)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품목별 전국 단위의 마케팅보드의 구축·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 축산 부문 및 과실·채소 등 일부 품목의 자조금들은 해당 품목의 소비 촉진 및 홍보 등의 단순 업무만 수행해 왔을 뿐, 만성적인 농축산물의 생산 과잉 및 가격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수급 조절 ▲생산자·유통업자 등에 대한 면허제(진입장벽) 시행 ▲지역·전국 단위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등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축산 부문의 자조금은 일찍이 의무자조금 방식으로 전환·시행중이나 원예(과실, 채소, 특작) 부문 자조금은 2015년 이후에야 일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중이며, 정부(농식품부 유통정책과)는 2017년까지 의무자조금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임
 - 농업선진국(뉴질랜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과 같은 강력한 마케팅보드 조직의 구축·운영을 목표로 한 중장기적 개편 방안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만 품목별 농업인들의 실질적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임

- 뉴질랜드 키위 산업의 경우, 민간자조금 단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령에 의거 키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스프리에 배타적 수출권한을 부여하여 독점적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구축·운영중임
- 캐나다의 버섯자조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령에 의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마케팅 대행조직에 주 상호간 및 수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면허권을 부여하고(버섯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재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음), 자조금을 거출하며, 마케팅 대행조직이 독점 유통하도록 되어 있음

37)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함
 - 대형유통업체의 의무 휴무일을 월 2회로 하고, 현행 휴일(일요일) 의무 휴무로 규정된 조항을 개정하여 평일 휴무로 전환해야 함

제안 배경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의 반발로 인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보에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속에서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형마트 및 SSM(대형유통업체가 만든 슈퍼마켓형 중·소규모 점포)에 대한 월 2회 의무 휴무제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시행된 것임
 - 제19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근 발의된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를 바꾸고 한 달에 2회인 의무 휴무일을 4일로 확대하는 것(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과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매월 쉬게 하며, 설날·추석 전날도 의무 휴무토록 하며,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의무 휴무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김중훈 의원 대표발의)으로 돼 있음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률·제도만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며, 대기업·중견기업은 물론 농·축·수협 및 농어업인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식임

38) 농업과 식품산업 부문 기업과의 상생협력(연계)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농업생산 분야 직접 진출을 원천 금지해야 함
 - 동부팜화용 사태, LG CNS 새만금 스마트팜 사태 등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됨
- 식품산업 분야 대기업·중견기업과 농어업인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적극 개척·발굴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요 확대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대기업·중견기업, 정부(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축·수협, 농어업인간 책임 있는 계약 관계 설정 및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발전시켜야 함

제안 배경

- 동부팜화용 사태,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팜 사태 등의 사례는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 등의 농업생산 직접 진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며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임
 - 이들 대기업들은 ▲토마토 등의 농산물을 가공·수출용으로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기술 개발 등을 명분으로 농업생산 분야 진출을 시도했으나, ▲농업인이 스스로 개척해 온 내수 및 수출 시장에서의 경합 등 부작용이 심각할뿐더러 ▲대기업·중견기업의 자본력·기술력·영업력에 훨씬 못 미치는 기존 농업인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일용직 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임
 - 가족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를 육성·발전시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과 농어업인간의 올바른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식품산업 분야 대기업·중견기업들이 농업인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농식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판매하게

되는 모델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2~2017)을 보완한 신식품정책을 2014년부터 시행중이며, 이를 통해 식품산업의 국내산 농산물 수요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종자 개발, 가공적성연구, 식품소재·반가공·식재료 산업 육성, 농업과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음
- SPC의 경우 우리밀을 도정·제분할 수 있는 자체 제분소를 갖추고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농업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밀을 수매하고 이를 원료로 한 고급 빵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주)농심의 경우 이전에는 감자칩의 가공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국산 수미감자를 활용한 감자칩 제조 기술을 신규 개발하고, 농업인들과의 안정적인 계약 재배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국산 수미감자의 신규 소비처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39)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식품산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제도의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품목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식품 대기업의 경우 매출규모, 시장 점유율 등의 기업별 차이가 크므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시 식품 대기업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만으로 농식품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생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운만큼, 농식품부·동반성장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이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국산 농축수산물을 100% 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안 배경

○ 농업계 및 농식품부 등과의 충분한 의견 조율·수렴 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됨

- 2011년 11월 두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후 2014년 산지 국산 콩 가격이 50% 이상 폭락한 사례가 있었음. 당시 충북 괴산군의 불정농협은 농식품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받아 콩 종합처리장을 막 완공하여 운영중이었는데, 해당 농협의 콩으로 두부를 제조하던 모 대기업에 납품할 길이 끊기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었음
- 중소기업청이 농축수산업과 관련 전후방 산업의 현실은 물론, 관련 부처 및 농업계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조율·수렴 없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자칫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려됨

40)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여, 국산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함
 - 핵심 이해 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과일류·축산물·수산물·화훼류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공산품 등과 달리 예외 품목으로 인정해야 함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한우·인삼·버섯류·과실류 등 고가 농축수산물(농식품)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보완(지원) 대책 또한 조속히 마련·시행되어야 함

제안 배경

-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설·추석 명절 선물용 소비 비중이 높은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실제 나타나고 있음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화환·조화 포함)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백화점 3사(신세계·롯데·현대) 및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의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 17년 설 식품(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청탁금지법 시행후 농축산물 도매·산지거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한우는 도축량이 감소(17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7.1%)하면서도 수요 부진으로 가격도 하락(9.6%)한데다, 도매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화훼의 경우 난 등 분화류 거래액은 18.5% 감소, 과일의 경우 사과·배 거래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2017. 2. 22)

농정 기조

7

국민의 먹거리인 농식품의 안보와
안전 체계를 확립

41)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대선평약 요구사항

-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중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조직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함
 - 식품산업의 진흥·발전 업무는 기존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서 담당토록 하되, 식품안전관리 및 식품안전평가 업무는 “식품안전청”에서 담당토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 함
 - 이를 통해 국제기구(FAO, WHO)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식품안전은 사육·재배시 농약, 항생물질 및 광우병 등 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임)
- 신설되는 “식품안전청”이 담당해야 할 업무
 - 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중인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 기준설정, 허가, 심사, 지도점검, 시험검사, 위해분석,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토록 함
 - 농업인·소비자교육·홍보·교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등

제안 배경

- 2013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중이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문적·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진흥·육성 업무를 침해할 소지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일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 직제 개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시도하면서 산하 국·과의 명칭에 “식생활소비”, “식생활영양”, “수입식품정책” 등의 표현을 반영하려 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한농연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있어 전문성·체계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식품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의약품과 동일(유사)한 단속 기준을 일

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산업의 진흥·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임

- 식품안전은 원재료가 나오는 최초 사육·재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약, 항생물질 및 각종 가축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원재료가 나오는 사육·재배단계를 관리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전문적인 식품위생·안전의 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농업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존 식품안전 담당 부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전면 쇄신을 단행하였으며,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개편된 경우가 많음(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42)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완전표시제 도입·실시

대선평약 요구사항

- GMO(유전자조작농산물)로 만든 농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 도입 및 GM(유전자조작) 농작물의 상용화를 영구 중단해야 함
 - 식품에 표시해야 할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기준(현행 3%)을 유럽과 같이 1% 이하로 낮추고, 식품성분 중에서 유전자조작원료가 중량 대비 5순위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함
 -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의무자(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제조 및 생산 후에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도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이상의 GMO 원재료 사용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함
 - 생산·수입·가공·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추적 및 표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 벼를 포함한 GM(유전자조작) 작물의 시험 재배 및 상용화를 중단해야 함(농촌진흥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지자체, 대학·연구소, 대기업 등의 GM 작물 온실 및 노지 시험 재배를 전면 중단해야 함)

제안 배경

- 유전자조작(GM) 작물, 유전자조작농산물(GMO)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의 책임 있는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상태이며, 이는 국산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농식품의 안전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큼
 - 우리나라는 안전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수입이 세계 2위(식용은 2016년 214만톤으로 1위)에 이르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민(소비자)의 먹거리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아래 표 참조)

<식품업체별 GMO 농산물 수입 현황(2011~2016. 6)>

수입업체	품목	건수	중량(톤)	비율(%)
(주)CJ제일제당	대두	344	3,113,412	31.98
	옥수수	76	217,353	
	유채	6	61,953	
(주)대상	옥수수	148	2,360,117	22.12
(주)사조해표	대두	128	1,772,143	16.61
(주)삼양사*	옥수수	156	1,718,722	16.11
(유)인그리디언코리아**	옥수수	130	1,405,275	13.17
기타	대두, 유채	117	1,737	0.02
계		1,105	10,670,712	

주 : * 전 (주)삼양제넥스, ** 전 (유)콘프로덕츠코리아

출처 : “CJ·대상 등 5개 식품대기업, 5년간 GMO 1000만톤 수입”, 2016. 9. 21 기사,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16060>,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재인용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4일부터 시행중임
- 그러나 식약청의 개정안만으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국내에는 생산·수입·가공·유통 과정에서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추적 및 표시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통계 수집도 안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임
- 농촌진흥청 등이 시험 재배지에서 유전자조작(GM) 작물을 재배한 사실을 숨기거나, 재배 완료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잔여 유전자조작(GM) 작물의 DNA(유전자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마저 배재할 수 없다는 소비자 및 농업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해당 유전자조작(GM) 작물의 DNA가 동종 혹은 유사종에 유입되거나 야생 동물 혹은 인간이 흡입·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했던 2~3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43) 휴대 농산물 면세 허용총량, 품목별 한도 감축을 위한 “관세법” 개정

대선공약 요구사항

- 휴대 농산물 면세 허용 총량 및 품목별 한도의 대폭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법(제96조 제2항)” 및 관련 하위 법령·제도를 개정함으로써,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는 물론, 외래 병·해충 및 전염병 유입 방지를 도모해야 함
 - 면세 허용 총량은 10kg 미만으로, 품목별 한도는 1k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함
 - 휴대 농산물에 대한 검사·검역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함(상대국 세관의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

제안 배경

-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의 불법 반입·유통으로 인해 국내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외래 병·해충 및 전염병 등의 유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 관세청이 올해 1월 중순부터 시행중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의하면, 여행자 및 승무원이 가져오는 휴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총량을 ‘50kg 이내’에서 ‘40kg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생색내기식’ 개정이라는 농업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출처 : “보따리상 농산물 반입량 10kg 축소…생색내기용 꼼수”, 농민신문, 2017. 2. 20. 1면 보도)
 - 19대 국회 당시 여행자 등의 휴대 농산물 반입량을 50kg에서 20kg 이내로 줄이고, 검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이는 보따리상·선사·중국측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던 정부 관련 부처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보따리상이 이미 80% 이상 중국인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전에 활동하던 내국인을 내세워 ‘50대 이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영똥한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어오는 면세 농산물은 공식 집계된 수치만 1만 7,500여톤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17,918톤, 2014년 17,525톤, 2015년 17,425톤이 반입되었으며, 품목별로는 관세 차익이 큰 녹두(420%), 팥(420%), 대두(487%), 마늘(360%), 참깨(630%) 등이 많이 들어왔음 (출처 : “참깨 자급기반 무너지는데…중국 무역보복 눈치만”, 농민신문 2017. 2. 20. 7면 보도)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불법·탈법적인 휴대용 농산물의 반입·유통을 계속 용인할 경우, 외래 병·해충 및 전염병의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경(공항, 항만)에서의 동·식물 검사·검역 및 안전성 검사 체계(SPS) 전반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최악의 상황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임

44)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핵심 곡물(식용, 사료용) 자급률 제고

대선공약 요구사항

- 식용 및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전체 식량자급률(칼로리자급률) 향상을 위한 5~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 곡물자급률은 40%, 전체 식량자급률(칼로리자급률)은 6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정책(쌀 생산조정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정책 등)을 시행해야 함
-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생산·소비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식생활교육·환경·건강 등의 내용을 반영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 기초) 단위의 푸드플랜(Food-Plan)을 마련·시행해야 함
 -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친환경농업 확대, 농가소득 보장, 후계농업경영인 및 신규 창업·취농 청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업인력 육성·지원 방안, 로컬푸드 활성화 등
 -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방안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대선, 지역 농업·식품 지원사업 연계 강화, 비만·당뇨 등 성인병 저감 노력 방안 등
 - 전통 식문화의 보전·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 6차산업화 및 전통음식 조리 활성화 등
 - 지속가능성 증진 : 농촌다움(어매니티)의 유지·관리, 환경부하 감축, 생물다양성 증진 등
 - 식품 취약계층에 대한 국산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 지원 방안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 푸드플랜을 수립·실천하기 위한 민관 협치 의결구조, 중간지원조직, 민간조직의 육성·지원 제도 정비 등

제안 배경

- 쌀(101.0%)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3.8%, 식량자급률(칼로리자급률)은 50.2%(2015년 기준, 농식품부 통계)에 불과하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대·내외적 불안 요소(외교·군사·경제)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곡물(식량)자급률 향

상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곡물자급률(식량자급률, 칼로리자급률)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 수입 식용·사료용 곡물(밀, 보리, 콩, 옥수수 등)이며, 현 추세대로 식생활의 서구화(육류화)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쌀 생산·재고의 상대적 과잉만 심화될 뿐 중장기적으로 곡물(식량)자급률의 저하를 방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벼(쌀) 재배 중심으로 돼 있는 논농업 생산구조를 다양화(사료작물, 녹비작물, 잡곡 등)를 위한 생산조정제의 도입·실시와 아울러, 조사료(총체벼 포함)·녹비작물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타 식량작물(밀, 보리, 논콩 등) 등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함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단위 푸드플랜의 수립·실천의 필요성

-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 기초) 차원에서 먹거리 관련 정책들과 관련 부처·부서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지속가능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식량자급률 제고정책과 관련 내수산업(전후방 산업) 및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섭취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간의 연계성이 취약함
- 전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식량위기, 건강위기, 기후위기 등의 불안 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국가, 지자체 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은 하락하고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생활습관으로 인한 성인병 환자 증가, 계층간 영양섭취 양극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및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하여 실천해 나가는 넓은 의미의 푸드플랜을 수립·실천해나가야 함

45) 농농업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개편을 목표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실시

대선공약 요구사항

- 벼(쌀) 재배에만 집중돼 있는 현행 농농업 생산구조를 20~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전환·다양화(사료작물, 녹비작물, 잡곡·채소·과채 등 타 식용작물 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실시해야 함
 - 쌀 이외의 밀, 보리, 콩, 사료작물(총체벼 포함), 녹비작물을 심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체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사료작물 자급률도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단, 밀·보리·콩 등의 대체작물은 국내 수요량 부족으로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료작물(총체벼 등 조사료)이나 녹비작물 재배 위주로 유도하여 금전적 인센티브(예 : 2011년 논콩 재배시 ha 당 300만원 지급 사례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함
 - 밀·보리·콩 등 식용 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수매해 주거나, 농가가 판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책(예 : 농협 혹은 생협 등에 대한 수매자금 저리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함
- 이를 통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2017년도 지급액 1조 4,900억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10만 ha 적용시 매년 3천억원 소요)으로 쌀의 수급·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함

제안 배경

- 2016년말 기준 정부 및 농협·민간 보유 쌀 재고가 210만톤을 넘는 상황에서, 적정 쌀값을 보장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곡물(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의 조속한 도입·실시가 요구됨
 - 국회 농식품위가 2016년 정기국회 당시 904억원의 쌀 생산조정제 예산(총 3만 ha, ha 당 300만원 지원)을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 2016년말 한육우 및 젖소용 조사료로 활용 가능한(적정 사료효율을 갖춘) 총체 벼 종자 확보량이 1,800ha 정도만 파종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정부(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차원의 논농업 생산구조 개선을 위한 준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음
- ▲단기 및 중장기적인 국제 곡물(옥수수, 밀, 보리 등 잡곡) 가격·수급 불안정 문제 ▲조사료용 곡물 재배 및 수확후 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농기계·부품 등의 구입 비용) 문제 ▲밀·보리·논콩 등의 국내 수급 불균형 문제(과잉생산시 가격 폭락, 판로 미확보 등)와 같은 부정적 요인들이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쌀 생산조정제는 중장기적(20~30년 이상)인 관점에서 논농업 생산구조의 전환·다양화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 올해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 상한(2017년 3월, 총 1조 4,900억원 지급)까지 집행되었으나 76억 9,200만원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초래되었으나,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 조정이 정례화·정착될 경우 매년 최대 3천억원(최대 10만 ha 적용시)의 예산만으로도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여 가격·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임(아래 참고자료 참조)

※ (참고) 쌀 생산조정제 도입시 기대 효과 설명 자료

- 전제조건 : ha(1만m²) 당 쌀(정곡) 생산량을 5t(1천m²=10a 당 500kg)으로 가정
- (표 1) 쌀 생산조정제 도입시 소요 예산(안)

적용 면적(ha)	생산 감소 예상량(t)	정부 재정 소요 예상액(억원)
3만ha	15만t	900억원
6만ha	30만t	2,000억원
10만ha	50만t	3,000억원

○ 쌀 직불제(변동직불금) 및 정부 시장격리시 지출 관련 소요 예산(안)

- (표 2) 정부 시장격리시 지출 예상액(안)

시장격리 물량(t)	쌀 생산조정제 미시행시 시장격리 예산 예상액(억원, A)	생산조정시 면적 환산(ha)
15만t	약 3천억원	3만ha
30만t	약 6천억원	6만ha
50만t	약 1조원	10만ha

- 쌀 생산조정제 적용시의 예산 소요액(C)과 시장격리+변동직불금(A+B) 예산안을 비교할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계산 결과가 도출됨
- 전제 조건 : 쌀소득보전직불제(변동직불금) : 1조 4,900억원(2017년 변동직불금 지

급 총액, B)을 적용

생산조정시 예산 예산액(억원, C)	시장격리(A)+변동직불금(B) 소요 예산 예산액(억원)	생산조정 면적(ha)에 해당하는 시장격리 물량(t)
900억원	약 1조 7,900억원	3만ha(15만t)
2,000억원	약 2조 900억원	6만ha(30만t)
3,000억원	약 2조 4,900억원	10만ha(50만t)

- 위의 표를 분석한 결과, 최저 1조 7,000억원~최대 2조 1,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A+B-C)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주의 : 위의 계산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금의 지출이 전혀 없이 쌀 생산조정제만 시행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정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규모를 추산한 것임)

농정 기조
8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구조의 확립 방안

46) 농업용 시설(RPC, LPC 등)에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대선공약 요구사항

-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해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해야 함
 -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건조·저장)과 산업용(도정)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료로 전체 적용, 일원화해야 함

제안 배경

1) 미곡종합처리장(RPC)

- 최근 지속되고 있는 풍작에 따른 역계절진폭의 확대와 쌀 과잉재고 등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경영악화로 인해 약 10년동안(2003-2014) 농협 RPC는 199개소에서 151개소로, 민간 RPC는 153개소에서 83개소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농협 RPC 통폐합 등 구조개선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수의 RPC가 폐업된 것임
 - 또한 2015년 기준 농협 RPC의 전체손익 규모는 약 340억원에 달하며 전체 153개소 중 60.8%에 달하는 93개소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RPC의 경영개선을 통한 수확기 벼 매입 여력 확대 및 매입가격 인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벼 도정 과정에 대한 농사용전기 요금 적용은 절실한 과제임
- 현재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핵심 공정인 건조·저장·도정 과정은 같은 건물, 동일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된 작업체계에 있으며, 도정 과정에서 쌀 성분과 원료 형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가공식품분류지침』 “가공식품 아닌 농산물로 보는 것”에 대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처럼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도정과정 때문에 RPC가 가공·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도정 과정이 제조업에 속한다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처사임

○ 쌀 산업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 미래 식량안보와 주식산업의 지속 발전을 포함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농사용전기 완전 적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2010~2014년 수확기 벼 판매 비중을 보면 전체 생산량의 41.7%가 농협·민간 RPC로 판매되고 있음. 농가인구의 고령화, 규모화에 따른 대규모 건조·저장 시설 필요성 증대 등은 향후 농업인의 RPC 의존도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 유지의 중요한 요소이며 쌀 산업에서 RPC는 가격·수급안정 등 공익적 역할 수행을 통해 미래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RPC는 산지 쌀 생산·유통의 중심체이자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담당하는 농업인 공동이용 시설이므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건조·저장)과 산업용(도정)으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농사용 전기료로 전체 적용, 조속히 일원화해야 함

<농사용전기 완전적용시 절감액 추정>

구분	산업용요금	농사용요금	절감액
총 사용요금(백만원)	11,709	4,285	7,424
개소당 사용요금(백만원)	79.1	28.9	50.2

주) 총 사용요금 : 농협RPC '16.01 ~ 16.05(5개월) 전기사용 요금 전수조사 결과를 1년(12개월)으로 환산한 금액임.

농사용 요금 적용비율 산출 = 농사용 58.4 ÷ [산업용 199.2 - (199.2 × 20%, '16년 할인적용)] = 36.6%

농사용전환시 절감 금액은 '15년 공청회시 적용된 산업용단가 199.2대비 농사용단가 58.4를 적용하여 비율 산출 자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자료집

2) 도축장(LPC)

-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을 농사용전력(병)에 적용하고 있음
 - 도축업의 경우 축산업의 범주에 속하며 도축장내에 주요 전기소요는 도축시설, 냉장·냉동시설·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사용되고 있음

- HACCP적용의무화(03'7월부터)에 따라 도축장 설비보완 및 냉장·냉동시설 증축 등을 위한 제비용 부담증가로, 도축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도축장 영업자가 도축세를 높게 적용시 축산농가의 부담가중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소와 돼지를 예냉후 익일~3일후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냉장시설에 따른 전기료 비용증가가 많음

- 농수산물 건조·저온보관시설 및 제빙·냉동시설이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고 있어 도축장에 사용하는 전력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47)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공급체계 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해야 함
 - 농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급 기준량의 70%~ 80%(250만kl ~ 280만kl) 등 농식품부가 정한 공급기준량을 농업인에게 최대한 직접 배정하여 공급기준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
 -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시간 계측기 의무 설치 제도를 폐지해야 함
 - 부정유통을 억제하고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합리화하려는 정부정책에는 호응하지만 농가비용부담 문제, 정책 효율성 미흡 등 관련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를 폐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식품부가 책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기준량 대비 현장 농업인의 실제 배정량은 전체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아 공급 기준량에 대한 불신이 초래됨
 - 추가 배정을 요청한 농가에만 추가 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농업인간 불평등 발생 및 제도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농기계 및 농업용 난방기 등에 대한 시간 계측기 사용 의무는 폐지되었으나, 농업용 기계(트랙터, 콤바인 등)에 대한 시간 계측기 부착 의무는 폐지되지 않은 상태임
 - 지금까지 시간계측기를 설치한 농기계 85만대에 농업인이 부담한 비용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농기계 사용 시간 계측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물론, 잦은 고장, 사후관리 부실로 면세유 관리에 시간 계측 결과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면서 농업인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48) 농업·농촌 분야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인 주택,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지원(신규 시설 설치 자금, 농가 생산전력의 수집·판매 등)을 확대해야 함
 - 정부, 지자체, 농·축·수협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도시인·외지인이 아닌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관리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농업법인, 협동조합 등)을 보급·정착시켜야 함
 - 농촌 태양광사업 보급 과정에서 토지의 난개발, 경관훼손, 빛 반사 등으로 인한 농작물 및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어업인의 초기 진입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정책자금 지원, 정부·지자체 보조금 확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에 농신보 보증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협동조합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업자로 등록 필요)

제안 배경

- 정부와 농협 등이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으나, 사업 초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농촌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며, 농협도 농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금 지원 확대 등에 나서고 있음.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총 1만호의 농가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임
 - 태양광보급의 경우 2016년 10월을 기준으로 농지 23%, 일반부지가 23%, 임야나 목장 19%, 축사나 동식물시설 14%순으로 설치돼 있음. 그런데 외지 개발자들이 농촌 지역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경관이나 환경훼손, 빛 반사 등에 따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농가소득 증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농어촌 주택 및 농업용 시설용 전력 공급률 제고를 위한 애초 사업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고, 농촌 주민 및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49) 농기자재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기자재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자재정책팀”을 “농기자재정책국”으로 격상·강화해야 함
- 농기계 가격거품 제거, 정부 농기계구입자금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 농업인 매비용과 금융 부담 경감을 유도해야 함
 - 현행 농기계 가격에서 약 10~15%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정부 농기계구입자금 정책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해야 함

제안 배경

- 농기자재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매우 취약함
 - 현재 식량정책관 산하 “농기자재정책팀”은 서기관급 팀장 1명, 사무관 2명(농기계업무 총괄 1명, 비료 1명), 주무관 3명(비료·친환경농자재 1명, 면세유·농기계 1명, 기획 및 농약 1명)으로만 구성돼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농기자재의 원활한 공급(정책자금 확보·배분)과 사후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임
 -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저렴한 농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여기에 농촌진흥청 및 대학·민간 연구소 등이 결합된 현장중심형 R&D 개발 기능 강화(원천기술, 응용기술, 현장애로기술 해결, 농기자재 표준화, 농기자재 품질 검증)는 물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R&D 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50)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권·인권 보호를 위한 “고용허가제”의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함
 - 타 산업 분야(광공업, 서비스업)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 조건(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무시간 제한, 농약 중독 및 농부증 등의 예방, 최저 주거 여건 보장 등)을 보장하여 불필요한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불법·탈법적인 근무지 이탈을 예방할 수 있게끔, 고용주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전환은 물론 정부(고용노동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의 지원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절대적·상대적 숫자가 부족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업경영체)에 배정되는 고용허가제 쿼터 인원을 확대해야 함
 -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한국 농업·농촌 내 농업노동의 특성을 올바르게 교육·이해시키고(한국형 농업노동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강화) ▲타 산업 분야와 비교하여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배치해야 하며 ▲농업·농촌 분야에 최적화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함(농번기 초과근무시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적용해야 함)

제안 배경

- 농업·농촌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노동강도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한계점으로 인해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인권·노동권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농업·농촌 부문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3D 업종에서의 저임금 문제로 인한 내국인의 농업·농촌 분야 취업 부진)으로 인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노동자의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타 산업에 비해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 및 인권·노동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등이 농업·농촌 분야의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농업·농촌 분야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임
- ▲고용주(농업경영체 대표 등)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적인 인권·노동권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전환이 절실할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의 타 산업 부문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건 개선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정부·지자체·농축협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51)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를 위한 관리·추진체계 정비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의 별도 신설·운영을 포함한 중앙 단위 방역 조직 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현행 “축산정책국” 산하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를 신설되는 별도의 “방역정책국” 산하로 이동·배치토록 함으로써, “축산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 진흥·육성 업무와 가축 방역 업무를 분리하고 전문화해야 함
 - “방역정책국”은 평시에는 방역 정책에 집중하고 질병 발생시 대응 업무를 중점 수행하는 체계(중앙 핵심 컨트롤타워)를 구축토록 해야 함
 - 현행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역 정책 부서를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 재분류 및 조직 개편을 시행해야 함
- 현장 방역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현재 지자체(광역, 기초),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방역 집행 업무를 지자체 중심으로 일원화(예 : 일본의 경우, 각 현의 축산부서와 가축보건위생소에서 방역 집행 업무를 전담)하여, 지역에 전담 부서를 두고 질병 예방에서부터 발생시 대응까지 수행해야 함
 - 시·군별 가축 사육두수를 감안하여 공공 수의사의 정원을 늘려, 사전적 예방 조치와 사후적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함
 - 현행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초래되는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칭)가축진료공제 보험”을 별도로 도입·운영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해야 함

제안 배경

- 최근 몇 년 동안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이 빈발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데다, “공장형 축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체계적·선제적인 예찰과 사전 차단 방역을 통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례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어진 구제역과 AI는 정부 방역 정책 및 추진 체계의 총체적 부실(핵심 컨트롤타워의 취약)로 초래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었음
-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률의 경우, 작년 농식품부가 발표한 항체형성율은 소 95.6%, 돼지 69.7%였으나, 실제 농가 조사 결과 보은군 젖소 농가는 19%, 정읍시 농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게다가 올해 새로이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비한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정부가 확보한 백신 재고마저 턱없이 부족하여 긴급 수입·접종을 하더라도 최대 보름 동안의 공백기간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었음
- 특히 50두 미만 사육 농가에게만 공공 수의사가 접종토록 하고(접종비 정부 전액 부담) 그 이상인 경우 농가가 직접 접종토록(접종비 정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 한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 산하에 “방역총괄과”와 “방역정책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축산업의 진흥·발전 정책을 책임지는 축산정책국 산하에 방역 기능을 2개 과 정도의 조직으로 운영하여 중앙 단위의 총괄 기능은 물론 지역별 현장 방역 기능마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

52) 사료(조사료) 자급률 제고, 환경보전형 축산 활성화 방안 마련

대선공약 요구사항

- 총채버·옥수수 등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켜야 함
 - 잉여쌀 생산지에 사료작물 재배로 쌀값 안정화 및 조사료 재배를 확대해야 함 (2016년 현재 이모작 가능 논의 42.5%만 이용중)
 - 조사료 재배 간척지의 임대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임대료를 감면해야 함

-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개별 농가의 냄새저감 시설 설치자금 지원 정책을 신설해야 함
 - 생산성 향상 및 방역·분뇨 문제 해결 전기 마련을 위한 권역별 친환경 축산클러스터(생산, 사료, 생태관광, 연구, 교육, 가공, 유통 등 포함)를 조성·운영해야 함

- 공장형 밀식사육 축산 생산 방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확대해야 함
 - 전체 축산 중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함(동물복지 장려를 위한 축산 직불제 등을 포함한 친환경 축산 정책 예산을 확대해야 함)

제안 배경

-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2%를 담당할 정도로 국내 농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했으나(축산 관련 전후방 산업 규모는 약 63조 4천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56만명 수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사료비 절감이 필수임
 -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은 42~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료 부족량은 105만톤 수중(3,950억원)으로 전량 수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를 조속히 도입·실시함으로써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꾀

할 필요가 있음. 4만 6천ha의 면적에 매년 쌀 24만톤이 과잉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조사료 재배로 전환할 경우 45만톤을 생산할 수 있음(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90%까지 높이고, 조사료 수입물량도 60만톤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 또한 연간 1,400억원 줄일 수 있음)

- 농촌 생태·환경 보호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밀식 사육 위주로 이뤄지는 지금의 축산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가축전염병, 환경 오염, 수입 사료 의존성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 향후 10년 내에 미국·유럽연합과의 FTA로 인해 쇠고기(미국 2026년, 호주 2029년), 냉장 삼겹살(미국 2021년, EU 2021년) 등의 관세가 0%로 될 예정이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와 같은 수입 사료에 의존한 밀식 사육(무창축사) 방식을 고수한다면 농업 선진국들의 축산업과의 격차(가격경쟁력 등)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며, 농촌 생태·환경 보호와 동물복지를 감안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해야만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농정 기조

9

7천만 민족이 주인 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구축

53) 초·중·고교생 및 일반 시민 대상 농업·농촌 교육 및 식생활교육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가칭)농업가치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경제 부문의 경우, 국민의 경제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지원법”을 2009년 제정한 사례가 있음
- 초·중·고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농업·농촌의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사회적 가치는 물론, 농산물의 재배 방법 및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 등의 현황 및 발전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함
- 국민 건강과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식생활교육 확대가 필요함
 -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연계한 생애주기별 식생활·영양 정책을 확대해야 함
 -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함
 - 학교급식(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을 포함한 공공급식(군대, 병원, 회사 등) 전반에 걸쳐 국산 농축수산물 및 국산 농식품의 공적 조달체계(정부·지자체·농축협·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등)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먹거리 복지” 및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함

제안 배경

-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가 핵심 리더 및 도시 소비자들의 공감대 형성 및 올바른 인식 형성이 매우 미비한 상황임
 -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제도권 정규 교육은 물론 사회인 교육 차원의 다양한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국산 농축수산물의 생산이 이뤄지는 농업·농촌의 현황은 물론 이와 연계된 전·후방산업에 대한 국민(도시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TV·신문·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음식점 탐방 프로그램들의 영향력만 강화되는 추세여서, 농업·농촌 및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올바른 식생활교육과는 괴리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
- 이 가운데 도시 소비자들은 국산 농축수산물(원물) 및 그 가공품(농식품)을 활용하여 스스로 구입·조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감소와 생산·재고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1950~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도시에서 나고 자라 농촌에 대한 향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통하여 직업 및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형성을 도모해야 함

54) 취약 계층 식품보조 지원 정책을 내실화

대선평약 요구사항

- 전통적인 식품 취약계층(빈곤계층 영·유아, 청소년, 노년층 등)은 물론, 청년층(대학재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국산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보조 지원 정책을 내실화·강화해야 함
 - 전국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 한국형 푸드스탬프 제도 도입·실시(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비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위한 신선식품구매전용카드 제도를 도입·시행)
 - 청년층(대학재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교육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 등) 및 지자체, 농·축·수협, 시민사회단체 등의 재정 지원(공동 펀딩)을 통해 1일 3끼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식권(대학교·도서관·고시촌 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을 제공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제안 배경

- 식품 소비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지원·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광역, 기초) 등의 지원 정책 확충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 식량(식품) 및 영양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절대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탈출하였으나, IMF 외환 위기와 시장 개방 확대로 계층간 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식량(식품)의 구입·조리·소비에 소요되는 비용(시간 비용, 기회비용)” 부족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식생활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음
 -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을 심각하게 잠식·소멸시키는 핵심 위협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농·축·수협 및 농업계 모두가 선제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함
 - 전통적인 식생활 취약계층(영·유아, 청소년, 극빈층, 노년층 등)은 물론, 최근에는

청년층(대학재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식생활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음. 소득이 없거나 적은 이들 청년층이 장기간 열악한 식생활을 계속할 경우, 향후 취업 및 사회진출에 성공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소비를 확대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임

-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국 대학생 2,500여명이 “나의 공간 한 시간이 내 친구의 밥 한끼로”라는 모토를 걸고 “십시일밥”이라는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얻은 수익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식권을 지원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출처 : “밥이 곧 미래다 빼앗긴 청년 식사권”, 시사iN 2017. 3. 4 보도 참조)
- 그간 정부(교육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농식품부 등)와 지자체, 농·축·수협, 농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책임지지 못했던 청년층의 식생활(식사권)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또한 푸드플랜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사항임

55)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간 협력·교류 활동 지원 강화

대선공약 요구사항

-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간의 협력·교류 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특·광역시 소재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간의 교류 활동 확대(도시농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 체험농장 등)
 - 농어촌 체험마을을 활용한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 대상 도농교류활동 지원 강화
 - “1사-1촌 운동” 등을 통한 “대기업(노동자)-농업인(생산자)”간 협력 활동(꾸러미농산물, 우리쌀·농식품 소비 활성화 등)

제안 배경

-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국산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 교류 활동을 지원·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농업·농촌의 중요성 및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시농업 및 근교의 체험형 친환경농장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어린이·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은 물론 농업·농촌 및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으며, 도시 생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가꿀 수 있게끔 해야 함
 - 대도시 및 산업공단 지역 등의 대기업 노동자(화이트칼라, 블루칼라)들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을 적극 소비할 수 있으며(가정용 식재료, 단체급식용 식자재 등), 노동자와 농업인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함(사례 : 울산광역시 장생면 농업인들과 S-Oil간의 협력 활동, 청주 오창농협과 SK 그룹간의 협약을 통해 꾸러미 농산물을 공급한 사례 등)

56)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 (식량·농자재 지원, 기술·유전자원 교류 확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 대북 쌀 지원 재개, 비료·비닐 등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 교류, 남북한 토종 유전자원 공동 조사·연구 등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복원해야 함
 - 김정은 정권의 핵 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연합(UN) 및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지원·협력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화해 및 동북아 정세 회복 등을 대비하여 대북 제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 및 공동 연구·조사 사업 등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함

제안 배경

- 남북한의 농업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210만톤이 넘는 국내 쌀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현실적 압박도 있지만, 분단 70년 동안 끊어진 남북한의 농업 생산 분업 구조(평야지대가 많은 남한은 주곡인 쌀 생산에 집중하고, 산지와 고원이 많은 북한은 잡곡 및 사료작물 생산에 집중하는)를 중장기적으로 복원해 나가야만 한반도 농업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수 있는 것임
 - 북한의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화학비료·비닐류 등의 농자재 지원이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정착시키고, 수리·배수시설 및 구획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정비해야 함
 - 아울러 북한 지역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북한 내 농업유전자원(토종종자, 산림 자원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보전 사업, 주요 농작물의 육종·개량 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정 기조
10

효율적·미래지향적인
농정추진체계 개편 방안

57) 농업·농촌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대선공약 요구사항

- 매년 1천억원, 10년간 총 1조원을 확보·운용할 예정인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자금 확보 상한 및 운영 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자금의 확보·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함
-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효율적·효과적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실행해야 함
 - 농업법인·농어업 분야 협동조합·청년농업인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상생 방안 등을 포함한 농식품·농업 전후방 산업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투자 개념으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

제안 배경

-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1회성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농어촌의 근본적 혁신을 선도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 및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에는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농어업인 자녀교육 장학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 공동협력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으로 용도가 명시돼 있음
 - 그러나 이는 농어업·농어촌 부문의 극히 제한된 사업 분야로만 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농업법인·농어업 분야 협동조합·청년농업인 등의 혁신적 사업 아이템을 발굴·지원하는 데는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임
 - 농업인 및 농업법인·협동조합 등 농업경영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성장·확대시킬 수 있게끔, 자율추진사업 혹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1회성 자금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

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 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이자 혹은 저리 자금 형태로 용자 지원토록 하고 중앙 정부·지자체가 이차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저금리 기조 하에서도 원금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58) 자율·창의·책임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농정의 전면 혁신

대선공약 요구사항

- 중앙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자체(광역, 기초)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장시켜야 함
 -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하여 농림사업을 독점적으로 수립·집행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벗어나, 지자체들의 자율적 사업 영역을 인정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 선진국과 같이 국가 농정사무와 지방 농정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에 위임할 경우에는 그 비용과 인력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법정수탁사무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국가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하고, 기존의 국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포괄보조금화해야 함
 - 지자체에 포괄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도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함

제안 배경

- “중앙집중형, 중앙독점형” 농정 체제 하에서 지자체 농정의 재정 및 집행 자율성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중앙농정의 하부기관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임
 - 지자체 예산 운용시 중앙정부 지침과 정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임(지자체 평균으로 볼 때 총예산 중 자체 재원은 35% 의존재원은 52%여서 재정 자율성이 매우 취약함)
 -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8:2 정도인 상태에서, 실제 중앙정부가 법령상 규정 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그 중 약 40%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제한된 재정을 중

양농정 사업의 매칭을 위해 사용하고, 중앙농정 사업의 관리·집행·보고에 급급한
실정인어서 실질적으로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

59) 농업금융 시스템을 시장지향형·수요자 중심 체제로 개편

대선공약 요구사항

- 현행 농업정책금융보험원을 확대 개편하여 “(가칭)한국농업정책금융보험공사”를 설립하고, 현행 농협중앙회에 위탁·관리중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를 “(가칭)한국농업정책금융보험공사”로 이관해야 함
 - 농신보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기술력·영업력 등 성장 가능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평가할 수 있게끔 해야 함
 - 농신보의 선도농업인(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등)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한도를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대손보전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및 보유 자산 또한 농신보로 이관·통합해야 함
 - 자연인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10%의 부분보증을 폐지하고 농신보에서 전액 보증토록 해야 함

제안 배경

- 2000년대 초·중반 농가부채경감특별법에 의한 특례보증으로 인한 기금 고갈을 극복하고 농신보 기금의 건전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태에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음
 - 2015년 기준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2조 5,252억원, 보증총한도는 50조 5,040억원, 보증잔액은 11조 122억원, 실제 운용배수는 4.4로 나타나고 있음(출처 : 농협연감 2016, 농협중앙회, p.310)
 - 이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한 농신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나, ▲농신보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가 농신보를 위탁 운영하여 타 금융기관(정책자금을 취급하는수협, 시중은행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다 ▲농업인에 대한 10%의 부분보증을 요구하여 농업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에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기술력, 영업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심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60)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 분야 연구·개발(R&D) 체계로 재편

대선공약 요구사항

- 농업·농식품 분야 R&D 개발·육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농림수산기술 R&D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함
 -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 R&D 사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논문 중심), 원천기술개발연구(특허 중심), 산업화연구(제품 중심) 등 3단계로 기술단계별 특성에 맞는 기획·평가 체제로 이행해야 함
 - 농촌진흥청은 조직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업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해야 함.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분야(생명공학기술, 친환경·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업용기계 원천기술 개발, 토종유전자원 조사 연구,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 기술 등)에 대해 연구 역량을 집중해야 함

제안 배경

- 기초 연구 및 원천기술의 확보는 물론, 현장 농업인·농업법인 등의 실수요에 부합하는 R&D 사업 추진이 절실함
 - 2009년 이후 농업 분야 R&D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체계적인 R&D 사업의 기반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농촌진흥청 등 정부연구기관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돼 있으며 ▲통합 연구보다는 개별 연구와 단기적 연구에 치우쳐 기술성과가 미흡하고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현장 농업인·농업법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농기계 및 식품산업 분야 등의 사례와 같이 기초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성 있는 제품을 제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끔 R&D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조정 및 지원이 요구됨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